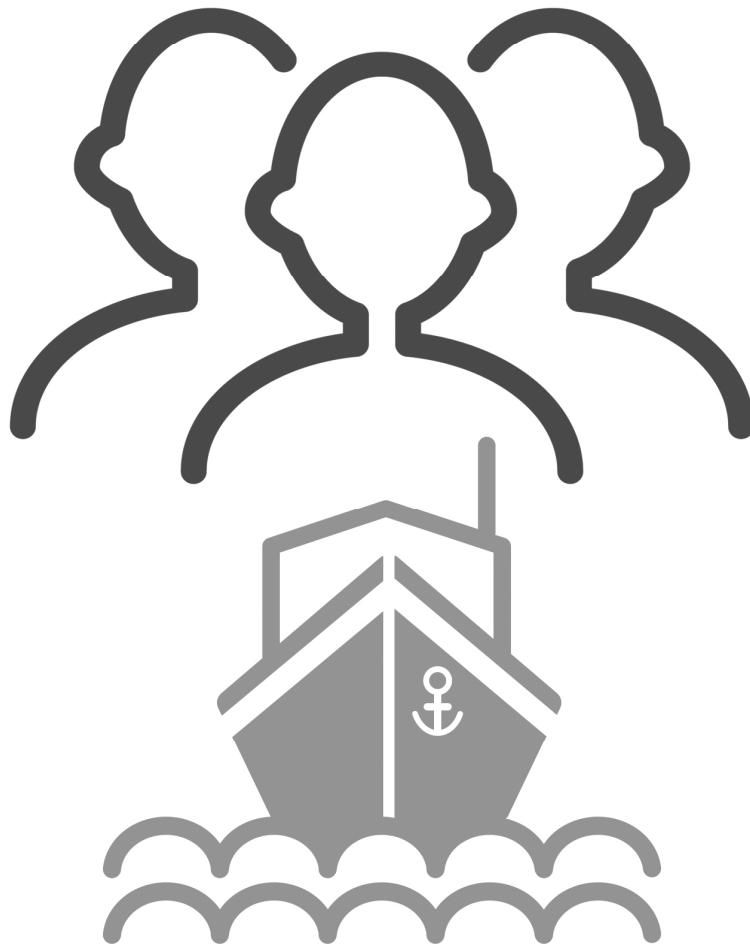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른 조선업종 지원 현장 합동설명회 자료

2016년



부산고용노동청, 부산중소기업청, 부산광역시, 부산국세청,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부산지사,
국민연금관리공단중부산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부산지역본부,
부산신용보증재단, 금융위원회

< 목 차 >

〈총괄〉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1
1. 부산고용노동청	9
2. 부산중소기업청	37
3. 부산광역시	63
4.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73
5. 부산국세청	91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사	105
7. 국민연금관리공단 중부산지사	109
8.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113
9. 부산신용보증재단	117
10. 금융위원회	123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1 제도 개요

-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근로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

※ 관련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0조,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2조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2 조선업 검토 배경

- 세계 조선수요는 '07년 95백만CGT로 피크 도달, '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부진, 저유가로 인한 해양플랜트 발주 급감 등으로 '15년 35.6백만CGT로 감소

- 이에 세계 조선업계는 공급능력과잉 조정에 돌입했으나, '15년 공급능력이 수주량에 비해 여전히 약 28% 과잉상태

- 금년 세계발주량은 23.5백만CGT(전년비 35%↓)로 최저점이 예상되며, '18년부터 환경규제, 유가회복 등에 힘입어 다소 회복될 전망

- * '16.1~5월 세계 발주량은 5백만CGT로 전년동기 대비 64.5% 감소

- * 발주량 전망(백만CGT) : ('96~'15 평균) 38.6 → ('15) 35.6 → ('16^e) 23.5 → ('17^e) 26.3 → ('18~21^e) 34.1

- 우리 조선업도 세계 조선업의 침체 속에서 중국, 일본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어려움에 직면

- * 수주 점유율('11→'16.5, %) : ▲(韓) 40.2→5.4 ▲(中) 34.9→40.4 ▲(日) 21.2→6.3

- 특히, 조선 대체 분야로 진출한 해양플랜트에서 기술력 부족 등으로 인한 대규모 손실이 발생, 조선업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
- '16.5월까지 신규수주는 14척, 수주물량은 전년 대비 10.7%에 불과, 수주가뭉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단기간 내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
- 조선업 불황은 대량고용조정 등 노동시장 불안, 철강·기자재업체 등 연관 산업 및 지역경제까지 연쇄적인 어려움을 초래하는 만큼, 이를 완충할 대책이 절실

3 추진경과

- '15.10월 「(가칭) 고용위기업종 근로자 지원 대책」 발표
- '15.12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
 - * 개별 기업 단위를 넘어 산업·업종의 구조개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범부처간 산업구조조정 논의('15.12월)에 발맞춰 업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16.5.13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공식 신청
- '16.6.8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안)」 논의
- '16.6.9 민관합동조사단 착수 및 현장실사(6.15~6.20) 등 추진
 - * 주요 조사 결과
 - ↳ ▲(지원대상) 협력업체는 독립 자산이 취약하고 고용유지 역량이 낮아 적극 지원 필요, 반면 대형3사(현대중그룹, 대우조선, 삼성중)는 고용조정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 ⇒ 금번 지정 시 대형3사를 제외하는 방안 검토 필요
 - ↳ ▲(지원기간) 7.1부터 1년간 지정
 - ↳ ▲(지원사업) ①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실화
②특별연장급여는 실업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
③조선업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효과적
④대체 일자리 사업이 필요하며, 자치단체 주도의 위기극복 노력도 중요
- '16.6.30 고용정책심의회 심의·의결

4 지정 범위 및 절차

(지정 업종 범위)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C311. 선박 및 보트건조업」

(지원 대상)

○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퇴직자 포함)

※ 대형3사인 현대중공업(계열사 포함),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은 금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내협력사(대형3사의 사내협력사도 포함)

○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도급을 받아 제조·수리 등을 하는 사업
으로서 매출액의 50% 이상이 지정업종과 관련된 사업의 사업주

① 표준산업분류상 C.311 선박 및 보트건조업 사업장

② 매출액의 1/2 이상이 ①의 사업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업장(기자재업체 등)

③ 매출액의 1/2 이상이 ① 또는 ②의 사업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업장

√ 지정 업종과 관련된 매출액 확인 방법

※ 지정업종과 관련된 매출액 확인 기간: '15.1월 ~ 12월(1년)

① 국세청홈택스에 접속(www.hometax.go.kr)하여 사업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② 조회/발급 클릭

③ 전자(세금)계산서 → 합계표 및 통계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클릭

④ 기간선택 후 조회 → 합계표 출력 → 지정업종 관련 사업장 구분

* 2015년 1기(예정+확정) 및 2기(예정+확정)을 선택하여 6개월 단위로 조회, 출력

(지정 기간) '16.7.1 ~ '17.6.30 (1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시 주요 지원내용 및 고시

구분		종전('16.6.30. 이전)	지정 시('16.7.1. 이후)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 2/3 대기업 1/2	우선지원대상기업 3/4 대기업 2/3		
	지원한도	1일 4.3만원	1일 6만원		
	지원요건	고용조정·신규채용 원칙적으로 금지	고용조정·신규채용 부분적으로 가능		
훈련	사업주 훈련지원	납부보험료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	납부보험료의 130% (우선지원대상기업 300%)		
	전직훈련	우선지원대상기업	120%	우선지원대상기업	150%
		1000인 미만	80%	1000인 미만	120%
		1000인 이상	50%	1000인 이상	90%
계좌발급	지방관서별 계좌발급 쿼터		지방관서별 계좌발급 쿼터와 관계없이 우선 발급		
	자부담 20~50%		자부담률 인하(10~30%)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유예 ×	납부유예 ○		
취업성공패키지 II		중위소득 100% 이하	특별고용지원업종 실업자 소득요건 해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절차 한도: 50억원	절차 간소화(공모 생략), 한도: 80억원		
체당금 운영 개선	지급요건	6개월 이상 사업수행	사업수행기간 합산 시 6개월 이상 (중간의 중단기간 1년 이내)		
	조력지원	10인 미만 사업장	30인 미만 사업장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 - 26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0조, 「고용보
 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2조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을 다음과 같
 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1. 지정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C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111 선박 건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31113 비철금속 선박 및 기타 항해용 선박 건조업
		31114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31119 기타 선박 건조업
	3112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2. 지원 대상

- 가. 지정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퇴직자 포함). 다만, 지
 정 업종의 대형 3사인 현대중공업주식회사(계열사 포함),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대우조선해양주식회사의 사업주 및 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지원여부 및 지원시기 등은 경영 및 고용상황, 고용조정 전망, 임
 금체계개편·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의 자구계획 이행의지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추후 결정
- 나. 지정 업종에 속하는 사업(제2항 '가'의 대형 3사 포함)의 도급을 받아
 제조·수리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매출액의 2분의 1 이상이 지정업종
 과 관련된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퇴직자 포함)

3. 지정 기간: 2016. 7. 1. ~ 2017. 6. 30. (1년)

4. 지정 업종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

가.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

위 제2항의 지원대상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지급요건 완화, 지원수준 우대 등의 특별고용지원 내용을 적용한다.

1)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 완화

구분	현행	변경사항
지원대상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동 고시 제2항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
지원요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제2항)	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 이직 금지 ②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근로자 신규채용 금지	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유지조치 대상에 포함된 피보험자 이직 금지 ②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고용유지조치 대상에 포함된 피보험자와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근로자 신규채용 금지

2)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우대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또는 휴직 등을 행하는 경우 아래의 금액을 지원한다. 다만, 1명당 1일 지급금액 상한액은 6만원으로 한다.

가) 단축된 근로시간이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4분의 3(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나) 단축된 근로시간이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②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을 지원한다. 다만, 1명당 1일 지급금액 상한액은 6만원으로 한다.

3) 사업주의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지원 우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제2항에 의한 피보험자 1명당 1일 지원금액 상한액은 6만원으로 한다.

나.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

위 제2항의 지원대상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지원수준 우대 등의 특별고용지원 내용을 적용한다.

1) 사업주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의 총 한도 우대

사업주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의 100분의 130(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0)

2) 훈련비 단가 지원 우대

① 위탁훈련

- 상시 근로자 1,000인 미만 사업주: 100%
-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주: 70%

② 자체훈련

-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150%
- 상시 근로자 1,000인 미만 사업주: 120%
-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주: 90%

5. 적용시점

가. 고용유지조치

이 고시에 의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은 이 고시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일 이후 신고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부터 적용한다.

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이 고시에 의한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은 이 고시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일 이후 실시신고한 훈련과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부터 적용한다.

부산고용노동청

1. 고용유지지원금	11
2. 무급휴업 근로자 지원제도	17
3. 장년근로시간단축 · 전환형시간선택제 지원사업	21
4. 체당금	25
5.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용자	27
6.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28
7. 사업주훈련	29
8. 실업자훈련[근로자]	31
9. 직업훈련 확대	32
10. 고용보험 미가입자 보호	33
11. 실업급여	34
12. 취업성공패키지	36

1 고용유지지원금

□ (개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이하 “지정업종”)의 지원대상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훈련 등)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 (지원대상 완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기준 완화

구분	현행	지정 업종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고용유지조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기준달)의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기준달의 직전연도의 같은 달(기준달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대비 15%이상 감소 등 일정 요건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 제2항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 * 지정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C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사업주 -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도급을 받아 제조·수리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매출액의 50%이상 지정업종과 관련된 사업의 사업주

□ (지원수준 우대) 지원수준을 인상하여 지원

구분	지원요건	지급기준	지원수준	
			현행	지정 업종
휴업	1월간 근로시간 단축률 20% 초과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 지급 * 평균임금의 70% 이상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	우선지원 2/3 대규모 1/2 (단축률 50% 이상 2/3)	우선지원 3/4 대규모 2/3 (단축률 50% 이상 3/4)
휴직	1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급 휴직을 실시하고, 휴직수당 지급 (해당 근로자의 동의 필요)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	우선지원 2/3 대규모 1/2	우선지원 3/4 대규모 2/3
훈련	고용유지에 적합한 훈련*을 소정근로시간 내 실시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 24조에 의거 인정(한국산업인력공단) 받은 훈련과정으로 1일 4시간이상 총 16시간 이상 실시, 훈련장소는 생산현장과 분리, 훈련기간 중 업무 종사 안됨	사업주가 훈련기간 중 지급한 임금과 훈련에 소요된 비용	(임금) 우선지원 3/4 대규모 2/3 (훈련비) 지원단가×훈련시간×훈련수료인원×100~120%	좌동

□ (지원요건 완화) 일부 신규채용이나 고용조정 허용

구분	현행	지정 업종
신규 채용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근로자 신규 채용 금지	고용유지조치 업무 영역 외에서의 신규채용은 허용
고용 조정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조정 금지	고용유지지원 대상자 이외 자는 고용조정 허용
공통	① 근로자대표와 협의 ② 타사 취업 또는 일용근로 시 제외 ③ 해고예고된 자, 고용 조정에 의한 퇴직예정자 제외 ④ 보험료 완납 ⑤ 해당월 휴업·휴직수당 포함 임금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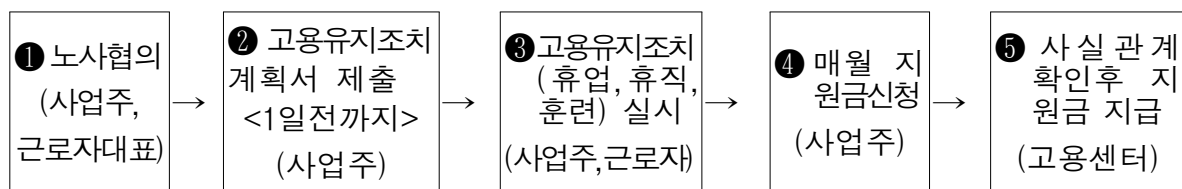
□ (지원한도 인상) 1명당 1일 지급금액 상한액 인상

구분	현행	지정 업종	지원기간 <동일>
지원 한도	43,000원	60,000원	휴업, 휴직, 훈련을 합하여 당해 보험 연도 기간 중 180일 범위 내에서 지원

□ (경과조치 등)

- 지정업종에 대한 특별지원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의 시행일 이후 신고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부터 적용함
- 이외의 사항에 대한 업무처리는 현행 법령에 따름

□ (사업집행절차)



※ [붙임1](고용유지)사업진행절차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제출서류 참조

✓ 근로시간 단축률 산정

$$\text{근로시간단축율} = \frac{(\text{기준기간 총 근로시간}) - (\text{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총 근로시간})}{\text{기준기간 총 근로시간}} \times 100$$

* 기준기간 : 휴업 실시월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

(예시) '16.6월 총피보험자수 50명, '16.5.31. 휴업계획서 제출, '16.6.1~6.30(1개월) 간 휴업실시

구 분	기준기간			3개월 평균 (㉠+㉡+㉢) /3	휴업실시 직전 1월~3월 ('16년3~5월)	휴업 실시월 ('16년6월)
	직전 6월㉠ ('15년 12월)	직전 5월㉡ ('16년 1월)	직전 4월㉢ ('16년 2월)			
총근로시간 (소정+초과)	11,500h	9,450h	8,400h	9,783h	* 작성생략	2,720h
소정 근로시간	9,200h (8h*50명*23일)	8,400h (8h*50명*21일)	8,400h (8h*50명*21일)			
초과 근로시간	2,300h (1일2h*50*23)	1,050h (1일1h*50*21)	-			0h
피보험자수	50명	50명	50명			50명
소정 근로일수	23일	21일	21일			21일

■ 휴업실시월(6월) 총 근로시간 : 2,720h (소정근로일 21일)

- 6.1~6.13(소정근로일 8일) : 30명 정상근무, 20명 1일 8시간 휴업 →
1,920h=(8일*20명*0h)+(8일*30명*8h)

- 6.14~6.20(소정근로일 5일) : 20명 정상근무, 30명 1일 8시간 휴업 →
800h=(5일*30명*0h)+(5일*20명*8h)

- 6.21~6.30(소정근로일 8일) ; 50명 전부 1일 8시간 휴업 →
0h=(8일*50명*0h)

■ 휴업실시월(6월) 단축된 근로시간 : 9,783h - 2,720h = 7,063h

※ 휴업실시월('16.6월)의 피보험자수가 50명이므로 '15.12월~'16.2월 피보험자수가 50명 이상이라도 50명에 대한 근로시간만 산정

《문의처》

부산고용센터 기업지원과 ☎ 051-860-1922~6
 부산동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 ☎ 051-760-7211~4
 부산북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 ☎ 051-330-9951, 9953~4

붙임

[고용유지] 사업진행절차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제출서류

①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

✓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고 1)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와 2)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실시일 전 일까지(변경 시, 변경신고서를 변경전일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1)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 : 매출액장부, 세금계산서, 납세신고서 등

- 매출액 비교 및 대비표 작성 예시

년도\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12월	합계	월평균
2015년					A 72,231				C 72,231
2016년	B(2~4월평균)				D 56,084	휴업실시			
		89,255	138,172	73,231					
대비(%)					-22.3%				

* 휴업실시: 6월, 기준달: 5월(D) → D가 A나 B 또는 C보다 15% 이상 감소하면 됨

2)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노사합의서, 회의록, 회의개최 시행공문 등(휴직의 경우, 휴직동의서 추가 제출)

② 고용유지조치 실시

✓ 계획 신고한 내용대로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훈련) 실시 및 계속 고용

-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고용센터에서 불시 점검 실시

- 계속고용 의무기간(고용유지조치 기간 + 1개월) 위반 시 지원제외

- ❖ 고용유지 조치계획 준수 의무 위반시 지원제한
 - 고용유지 조치계획보다 초과하여 시행된 경우 : 고용유지 조치계획에 따라 지급
 - 고용유지 조치계획보다 미달하여 시행된 경우 :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지급
 - 고용유지 조치계획보다 50%이상으로 미달하여 시행된 경우: 전부 부지급

③ 매월 지원금 신청

- ✓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훈련) 종료 후 매월 지원금 신청
 - 지급하기로 한 휴업·휴직수당 등을 포함한 임금 지급 후 신청

- ☆ 주휴일(일요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업(훈련)하고 휴업(훈련)수당을 지급하였을 경우 지원, 주5일제에 따른 특정휴무일(토요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업(훈련)하고 동 휴무일에 휴업(훈련)수당을 지급하였을 경우 지원
- ☆ 약정휴일(광복절, 신정, 구정 등)이 1일인 경우, 해당 약정휴일이 속한 주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업(훈련)하고 동 약정휴일에 휴업(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지원, 약정휴일이 2일 이상인 경우 약정휴일이 속한 주를 포함 연속하여 주간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업(훈련)한 주수만큼의 약정휴일에 대해 지원 (ex. 연속하여 2주휴업시 약정휴일 2일 지원)
- ☆ 휴업기간 부여되는 연차휴가, 하계휴가 및 경조휴가 기간은 지원금 부지급
- ☆ 휴업기간 중의 선거일, 법원출두일, 예비군훈련일, 민방위훈련일 등은 지원금 부지급

◆ 고용유지조치(훈련)

- 1) 실시절차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발생 → 노사협의 및 훈련계획 수립
 - **훈련과정 인정(한국산업인력공단)** → 고용유지조치(훈련) 계획 신고(고용센터)
 - 훈련실시 → 훈련비용 정산 → 지원금 신청(고용센터)

☞ **고용유지조치(훈련)**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적합한 훈련”이어야 하며(자체 훈련 또는 위탁훈련), **훈련수료자(80% 이상 출석)**에 대해서만 지원
“훈련과정”은 고용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잉여인력의 작업전환, 직무수행능력 향상 또는 새로운 직무에의 적응 등을 목적으로 편성되거나 그러한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과정이어야 하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에 의거 인정받은 훈련과정이어야 함

〈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인정신청 절차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

- ㉠ 훈련개시 7일전(자체 훈련은 5일전)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신청서, 훈련계획서 제출
-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과정 요건 적합한지 검토 후 인정여부 결정 및 통지
- ㉢ 훈련개시일까지 훈련실시신고서를 직업훈련전산망(www.hrd.go.kr)을 통해 입력

2) 훈련수당(훈련기간 중 임금) 산정

-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변동급과 실비변상적인 금품 등을 제외한 임금의 범위 내에서 인정

3) 훈련비 산정 : 훈련생 규모(30~40명)에 따라 지원금액*의 100~120% 지원

* 지원금액 :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별표3의 ‘국가직무능력 표준(NCS) 직종별 지원기준 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위탁훈련의 경우, 수탁훈련기관에 지급한 훈련비용이 산출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지불한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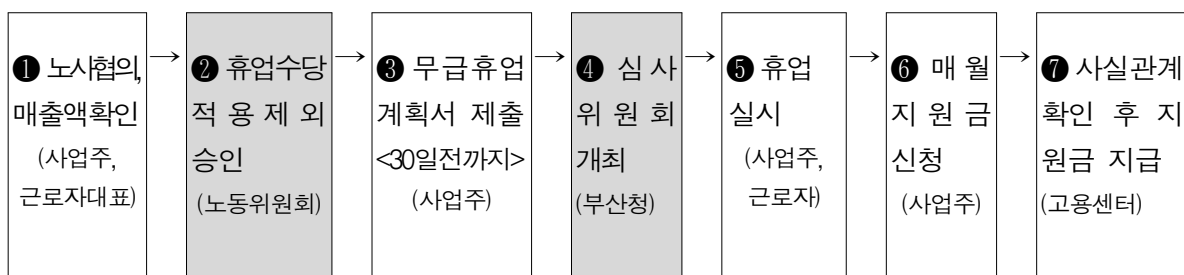
☞ 고용유지조치(훈련)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적합한 훈련”이어야 하며(자체훈련 또는 위탁훈련), 훈련수료자(80% 이상 출석)에 대해서만 지원
“**훈련과정**”은 고용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잉여인력의 작업전환, 직무수행능력 향상 또는 새로운 직무에의 적응 등을 목적으로 편성되거나 그러한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과정이어야 하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에 의거 인정받은 훈련과정이어야 함

2 무급휴업 근로자 지원제도

□ (개요) 사업주의 무급휴업(이주 낮은 수당을 지급하는 휴업 포함) 실시로 인한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도모

* **사전에 노동위원회의 휴업수당 적용제외 승인과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무급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 (사업진행절차)



□ (지원대상) 경기변동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①하게 되고 노동위원회의 휴업수당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센터에 계획신고서를 제출하여 심사위원회 승인^②을 받아 실시하는 기업의 무급휴업 근로자

①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기준달)의

1.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연도의 같은 달(기준달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대비 30%이상 감소
2. 생산량이 기준달의 직전연도의 같은 달(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대비 30%이상 감소
3.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대비 계속하여 20%이상 감소 추세

② 무급휴업 필요성, 근로자 조업복귀 가능성, 사업주의 경영정상화 자구노력, 직업능력 개발·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여부 결정

- (지원요건) ① 노동위원회 승인(휴업수당 적용제외) ② 근로자대표와 협의 ③ 30일 이상 연속 휴업 실시 ④ 무급 또는 50% 미만의 휴업수당 지급 ⑤ 사업(장) 규모별 실시율 충족

19명 이하	99명 이하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피보험자의 50%	피보험자 10명 이상	피보험자의 10% 이상	피보험자 100명 이상

- (준수사항) ① 고용유지조치기간 + 1개월간 당해 사업장 소속 전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감원시 지원제외) ② 신규채용 제한(발생시 지원제외) ③ 타사 취업 또는 일용근로 시 제외 ④ 해고예고된 자, 고용조정에 의한 퇴직예정자 제외 ⑤ 보험료 완납 ⑥ 계획서 제출일 이전 임금체불 없어야 함

-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수준, 지원기간 등 결정

-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지원한도) 1인당 1일 (現)43,000원 → (지정업종) 60,000원

- (지원기간) 1인에 대하여 누적하여 총 180일을 한도로 지원

* 임금수입 등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휴업수당 등 금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 그 금품과 지원금을 합산하여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금 지급

(근로자) 임금수입 사실을 사업주 또는 고용센터에 신고,

(사업주)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원금 신청

-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소요되는 지원금(1인당 매월 10만원 범위 내)

※ [붙임2] (무급휴업)사업진행절차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제출서류참조

《문의처》

부산고용센터 기업지원과 ☎ 051-860-1922~6
 부산동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 ☎ 051-760-7211~4
 부산북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 ☎ 051-330-9951, 9953~4

붙임 **[무급휴업] 사업진행절차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제출서류**

①②③ 노사협의+노동위원회 승인 및 무급휴업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

✓ <1>무급휴업 고용유지조치 계획 및 <2>무급휴업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향상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계획서」를 실시하기 **30일 전까지**(변경 시, 변경신고서를 **10일 전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10부 제출

1)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와 2)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 4)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1)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 : 매출액장부, 세금계산서, 납세신고서 등

- 매출액 비교 및 대비표 작성 예시

년도 \ 월별	1~2월	3월	4월	5월	6월 계획서 제출 (기준달)	7월	8월	...12월	합계	월평균
2015년					A 72,231					C 92,895
2016년		B (3~5월평균 83,257) 89,255 100,172 60,345			D 48,257	휴업	실시			
대비(%)					-33.1%					

* 휴업실시: 7~8월 , 기준달(계획서 제출한 달): 6월(D) → D가 A나 B 또는 C보다 **30% 이상** 감소하면 됨

2)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노사합의서, 회의록, 회의개최 시행공문 등

④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심사위원회 개최

- ✓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라도 심사위원회가 타당성 심사·결정
 -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사업장 결정
 - 무급휴업·휴직 지급대상 근로자, 지급 수준 및 지급 기간 등
 -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기간 중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향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여부, 지급 수준, 지급 기간 등

⑤ 고용유지조치 실시

- ✓ 계획 신고한 내용대로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실시 및 계속 고용
 -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고용센터에서 불시 점검 실시
 - 계속고용 의무기간(고용유지조치 기간 + 1개월) 위반 시 지원제외

⑥ 매월 지원금 신청

- ✓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무급휴업·휴직) 실시 후 지원금 신청
 - (근로자)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기간 중 일용근로 등 임금수입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사업주 또는 고용센터에 신고
 - (사업주)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기간 중 근로자에게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임금수입이 있는 경우, 지원금 신청 시 그 금액을 공제 후 지원금 신청

*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휴업수당 등 금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품과 지원금을 합산하여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금 지급

3 장년근로시간단축 · 전환형시간선택제 지원사업

□ (개요) 고용조정을 자제하고, 근로시간 단축^① 및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② 등 일자리 나누기 지원을 통한 기업의 고용유지 역량 제고

①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근로자 및 사업주 지원)

- (근로자) 18개월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시 줄어든 임금의 50%(월 90만원 한도)를 2년간 지원
- (사업주) 단축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2년간 지원

※ [붙임3] (장년)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참조

②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사업(사업주 지원)

- (전환형 시간선택제)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고, 전환제도 도입 및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월 20만원 한도, 1년간) 및 간접노무비(월 20만원을 1년간, 중소·중견기업) 지원

* 단축 후 근로시간 구간별로 근로시간비례 임금 상승분을 지급

※ [붙임4]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사업 참조

《문의처》

부산고용센터 기업지원과 ☎ 051-860-1922~6
 부산동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 ☎ 051-760-7211~4
 부산북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 ☎ 051-330-9951, 9953~4

붙임1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지원대상)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

* 생년월일 상 만 50세에 도달한 근로자부터 적용 대상

□ (지원대상) ①근로자대표 및 개별 동의 ②주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 ③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서면 명시

* 다른 임금피크제 지원요건과 달리 기준임금 감액을 명시 규정과 소득제한 기준 없음

< 유의 !! >

▶ 단축 이후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한 경우 해당 월 지원금 제외

□ (근로자 지원)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소된 임금*의 1/2을 최대 2년간 지원(1인당 연간 1,080만원 한도)

* 근로시간 단축 직전년도 임금과 해당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 : 소득세법 제20조①에 따른 근로소득(비과세 제외)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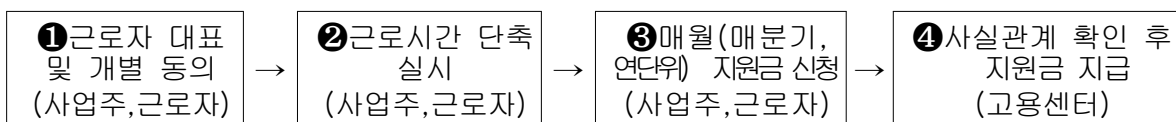
☞ (업무 Tip) "임금피크제"와 "근로시간 단축"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아야 함

□ (사업주 지원) 근로시간 단축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

* 임금이 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 지원도 지급 제한

☞ (업무 Tip) 세대간 상생고용지원금과 동일한 근로자로 인해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선택한 하나의 지원금만 지급

□ (사업집행절차)



< 지원 예시 >

근로자	소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임금: 연간 8,000만원	▶	소정 근로시간: 주 32시간 임금: 연간 6,400만원	▶	연 800만원 지원 (2년간)
사업주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 지원	▶	연 360만원 지원 (2년간)		

붙임2

전환형 시간선택제(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지원) 지원사업 <공모사업>

- (사업목적)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에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
- (지원대상)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업주(공공기관 포함)
- (지원요건) 시간선택제 전환제도*(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마련, 근로자의 필요(자녀돌봄, 임신기,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허용
 - * 전환제도 운영(전환시 근로조건, 전환사유, 최대 전환기간 등) 및 전일제 복귀 보장 등 포함
- (전환대상) 고용기간 6개월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초과 근로자
- (전환 후) 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② 1개월 이상 전환 ③ 전환전 시간비례 임금이상 지급 ④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전환전 근로시간비례 원칙 적용)
- 1주 5시간(월 20시간) 초과 연장근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지원금 등을 1년간 지원

- (전환장려금) 전환 후 근로시간 구간별로 월 최고 20만원(주 15~25시간) ~ 월 최고 12만원(주 26~30시간) 지원
<근로시간비례 임금인상액이 20만원(또는 12만원)보다 적은 경우 그 금액 지원>
- ※ 임신기 전환장려금 우대 : 주 15~30시간으로 전환시 월 최고 20만원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뿐만 아니라 출산 전까지 모든 임신기간에 우대 적용>
- (간접노무비)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전환형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당 월 20만원(정액)을 추가 지원
- (대체인력지원금) 대체인력 채용시 대체인력 인건비의 50%를 월 60만원(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 한도로 지원
- 대체인력 고용전 3개월부터 고용후 6개월까지 감원이 있는 경우 지원 제한

- ※ '16. 3. 25.부터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전면 시행되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함
-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고용센터) → 사업계획 심사·승인(고용센터→사업주) → 전환제도 도입(승인일로부터 6개월이내) 및 운영(사업주) → 지원금 신청(사업주→고용센터) → 검토 및 지급(고용센터→사업주)

4 체 당 금

□ 개요

- 도산기업 등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하여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 지원대상

- 일반체당금: 기업도산 + 임금체불 + 6개월이상 사업수행
 - * 도산 신청일 기준 1년전부터 3년내 퇴직한 근로자
- 소액체당금: 임금체불 + 법원 확정판결 + 6개월이상 사업수행
 - * 퇴직일 다음날부터 2년내에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

□ 지원요건과 지원내용 및 한도

사업명	지원요건	지원내용 및 한도																								
일 반 체 당 금	·사업주 : 법 적용 대상으로 6개월이상 사업을 가동하고 도산·파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자 : 도산·파산신청일의 1년전인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최종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 연령별 월정 상한액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령</th> <th>30세 미만</th> <th>30세 이상 40세 미만</th> <th>40세 이상 50세 미만</th> <th>50세 이상 60세 미만</th> <th>60세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종류</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임금퇴직금</td> <td>180</td> <td>260</td> <td>300</td> <td>280</td> <td>210</td> </tr> <tr> <td>휴업수당</td> <td>126</td> <td>182</td> <td>210</td> <td>196</td> <td>147</td> </tr> </tbody> </table>	연령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종류						임금퇴직금	180	260	300	280	210	휴업수당	126	182	210	196	147
		연령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종류																										
임금퇴직금	180	260	300	280	210																					
휴업수당	126	182	210	196	147																					
소 액 체 당 금	·사업주: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사업주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은 퇴직근로자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300만원 한도로 지급																								

□ 체당금 조력지원

◆ 체당금 조력지원제도

-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상시근로자 월평균보수가 250만원 이하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의 경우 제외
- (지원금액) 1개 사업장 당 300만원을 한도로 노무사에게 지급
- (국선공인노무사 선임) 지방관서 관할에 관계없이 국선노무사를 지정, 선택하지 않는 경우 순번제로 배정

□ 무료법률 구조지원

-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 지원안내

◆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

- 체불근로자들이 사업주 대상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종 3월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 체불근로자에 대하여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

□ 개정내용

① 체당금 지급 요건 완화

- 물량팀의 경우 3~5개월 정도 작업을 하기 때문에 체당금 지급요건* 중 “6월이상 사업의 수행” 요건을 충족하기 곤란

* 체당금 지급요건 : ①기업 도산+임금체불 ②(사업주요건) 6월 이상 사업의 수행 ③(근로자요건) 도산신청일기준 1년 전부터 3년내 퇴사

- ☞ “작업장을 달리하더라도 중단 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경우 각 작업장의 기간을 합산”하여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도록 변경

- ② 현재 1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체당금 청구 시 국선노무사를 활용할 수 있으나,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에는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지원범위를 확대(임채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

□ 지원(신청) 절차

- [일반체당금] 도산 신청 및 인정(지방관서) → 체당금 청구 및 지급의뢰(지방관서) → 체당금지급(근로복지공단)
- [소액체당금] 민사소송 제기 및 확정판결(법원) → 체당금 청구(근로복지공단) → 체당금지급(근로복지공단)

《문의처》

부산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 ☎ 051-853-0009
부산동부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 ☎ 051-559-6688
부산북부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 ☎ 051-309-1500

5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용자

□ 개요

-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재직근로자에게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가 신속히 청산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용자제도

□ 지원내용

◆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용자

- (용자대상) 1년 이상, 300인 이하 가동 사업장,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주
 - ※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판단 기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제8조의6 참조)
 - 재고량 증가,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등
- (용자금지급대상) 6개월 이상, 확인신청일 기준 1년 이내 퇴직 근로자(재직 중인 근로자는 6개월 이상 근무만 충족)
- (용자금액) 사업장 당 5천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6백만원 한도
- (용자조건) 용자금액 및 신용도에 따라 신용용자, 연대보증, 담보용자
 - * 이자율: 신용/연대보증 연 4.2%, 담보제공 연 2.7%
 - * 상환: 1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
- (신청 및 지급) ①용자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서 제출(사업주→지방관서)
 - ②체불금품 확인 및 확인통지서발급(지방관서→사업주, 근로공단)
 - ③용자신청서 제출(사업주→근로공단)
 - ④용자대상자 결정 및 통보(근로공단→사업주, 기업은행)
 - ⑤용자계약 체결 및 용자금 지급(기업은행)
 - ※ 사업주 용자금은 금융기관에서 근로자계좌로 직접 지급

《문익처》

부산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 ☎ 051-853-0009
 부산동부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 ☎ 051-559-6688
 부산북부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 ☎ 051-309-1500

6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 개요

-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장기 저리(연 2.5%,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로 용자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고취

□ 지원내용

◆ 임금체불 생계비

- (지원대상) 가동중(휴업 포함)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로서 용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부부 합산)이 4,3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용자한도) 1000만원 범위내 임금체불액

◆ 임금감소 생계비

- (지원대상) 6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 용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168만원 이하이고,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조치로 임금이 감소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였고, 소득이 감소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용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근로자
- (용자한도) 1000만원 범위내 임금감소액

◆ 소액 생계비

- (지원대상)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용자 대상 월 소득이 168만원 이하이며, 용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한 근로자.
- (용자한도) 200만원 범위내 임금감소액

《문의처》

부산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 ☎ 051-853-0009
부산동부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 ☎ 051-559-6688
부산북부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 ☎ 051-309-1500

7 사업주훈련

□ 개요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 내 재배치, 재취업을 위한 전직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 등 우대 지원

□ 지원대상

-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
- 지정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도급을 받은 사업으로서 매출액의 1/2 이상이 지정 업종과 관련된 기업

□ 개정내용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시 이후 실시신고 하는 훈련과정부터 적용

- ① 기업이 근로자에게 사업 내 재배치를 위한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 우대* 지원**

* (1000인 미만 기업) 60%→100% / (1000인 이상 기업) 40%→100%

- ②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이 퇴직예정자에게 재취업을 위한 전직 **훈련 지원 시 훈련비 우대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120%→150% / (1,000인 미만 기업) 80%→120%
(1,000인 이상 기업) 50%→90%

□ 사업주훈련비 지원한도액 상향

- 고기량 향상훈련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대상 훈련비용 지원 한도액을 상향**, 근로자에게 사업 내 재배치 등을 위한 직업훈련 확대

* (現) 납부보험료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 → (改) 납부보험료의 13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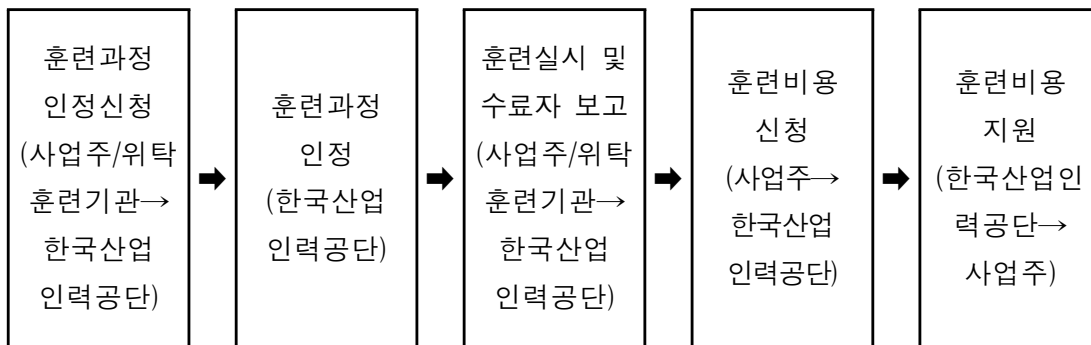
□ 유급휴가훈련 훈련비 단가 우대 등

- 특히, 해당 훈련을 유급휴가훈련 등으로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① 단가 우대 및 인건비^② 지원**

① 훈련비 : 1,000인 미만 기업 (現) 60% → (改) 100%
1,000인 이상 기업 (現) 40% → (改) 70%

② 인건비 : 중소기업 최저임금의 150% / 대기업 100%

□ 지원(신청) 절차



《문의처》

산업인력공단부산지역본부 직업능력개발팀 ☎ 051-330-1906

8 실업자훈련 (근로자)

□ 개 요

- 취·창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 습득이 필요한 실업자 등에게 직업능력 개발훈련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재)취직·창업 촉진과 생활안정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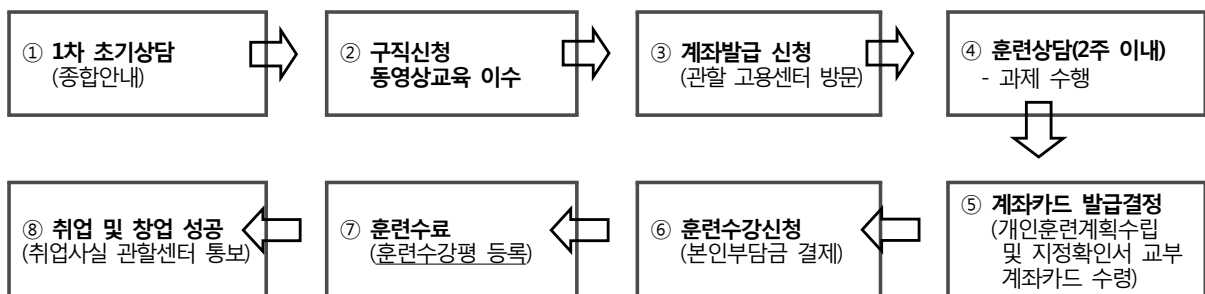
□ 지원대상

-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근무하다 경영악화에 의한 고용조정으로 실직한 근로자
 - *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조선,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퇴직근로자 제외 (단, 사내협력사는 포함)
- 지정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도급을 받은 사업으로서 매출액의 1/2 이상이 지정 업종과 관련된 기업에서 근무하다 경영악화에 의한 고용조정으로 실직한 근로자

□ 개정내용

- 조선업 실직자에 대해서는 지방관서별 계좌발급 사전배정 규모에 따른 제한 없이 직업능력개발 계좌(이하, 계좌) 우선 발급
 - 훈련상담 기간을 4주→2주로 단축하여 운영
 - 훈련계좌 발급 시 부과되는 훈련생 자부담 비율 인하(20~50%→ 10~30%)

□ 지원(신청) 절차



《문의처》

부산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과 ☎ 051-860-2130
 부산동부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 ☎ 051-760-7211~4
 부산북부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 ☎ 051-330-9842~3

9 직업훈련 확대

□ 훈련과정 확대

- 하반기 신규 신청과정 총 336개 훈련과정 중 과정적합성이 인정된 236개 과정을 최종 선정하여 하반기 운영과정을 확대완료 하였고, 수시심사를 통해 훈련과정 추가확대 검토 중

□ 훈련인프라 보강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의 공동훈련센터(10곳)에서도 향상훈련 외에 전직 및 실업자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전직·실업자훈련 지정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 현황〉

지역	소계	대중소상생형
		기업
부산	1	[5개소] <u>한진중공업</u> , 해양선박, 르노삼성자동차 만디젤엔터보코리아(주), 현진소재(주)
울산	3	[7개소] <u>현대중공업</u> , 현대자동차, 삼성SDI, <u>현대미포조선</u> , 포스코플랜텍 한국수력원자력, <u>이영산업기계(주)</u>
경남	4	[9개소] 현대로템, <u>삼성중공업</u> , <u>대우조선해양</u> , 두산중공업 <u>STX조선해양</u> , 건화(주), <u>삼강엠앤티(주)</u> 한국항공우주산업, 대동공업
전남	2	[2개소] <u>현대삼호중공업</u> , <u>대한조선</u>

《문의처》

산업인력공단부산지역본부 직업능력개발팀 ☎ 051-330-1906

10 고용보험 미가입자 보호

□ 개 요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로 일했던 사실이 입증되면 가입 조치 후 구직급여 등 서비스 제공
- ※ 더 많은 근로자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피보험자격 취득을 홍보·지도하고, 특별 자진신고 기간 운영

□ 특별 자진신고 기간 운영

- ① 대상 사업장: ▲조선업 ▲조선업 전속률 50% 이상 기자재 업체
▲조선업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타 업종
- ② 운영 기간: 2016. 6. 9. ~ 9. 8.(3개월간)
- ③ 신고 사항: 미신고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및 근로내용확인 신고, 미제출 이직확인서, 기신고된 피보험자격 정정 등
- ④ 신고 방법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고용보험팀(부산고용센터 내)에 신고서 작성 제출
 - 6개월 이상 소급 취득 신고 건은 증빙자료(급여지급자료 등) 필요
- ⑤ 자진신고 시 혜택
 - 과태료 면제(건당 3~10만원)
 - ※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미신고·허위신고 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최대 300만원)
 - ※ 미성립 사업장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성립 신고와 자격 취득 병행 조치
 - ※ 피보험자격 소급 취득 시 보험료 소급분 발생

《문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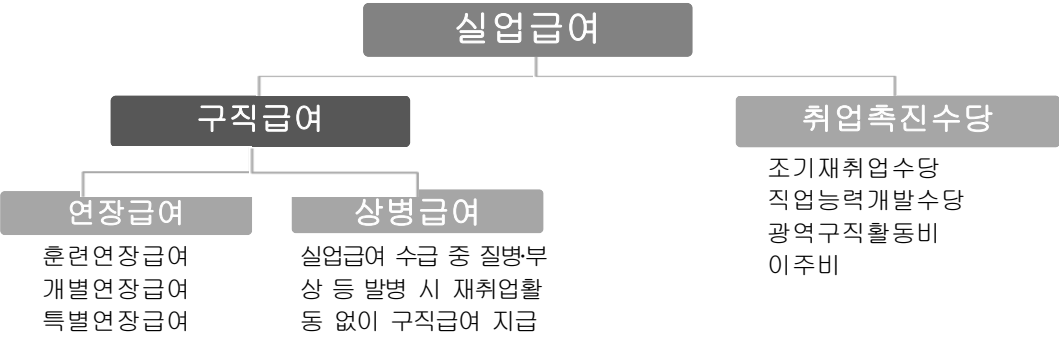
부산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 051-860-2077~85(상용), ☎ 051-860-2091~3(일용)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 051-760-7220~3(상용), ☎ 051-760-7234~5(일용)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 051-330-9946~7(상용), ☎ 051-330-9949(일용)

11 실업급여

□ 개요

-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일정한 요건 하에 지급하는 보장성보험의 일종

□ 실업급여의 종류



□ 수급요건(고용보험법 제40조)

- 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사유 또는 정당한 사유있는 자기사정으로 이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것

□ 지급액 및 지급일수

- 지급액: 퇴직전 평균임의 50%(2016년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 지급일수

	1년미만	1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신청 절차

- 신청(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워크넷 구직등록 필수, 사전수급교육
 - (2주후) 수급자격증 교부, 8일분 구직급여 지급
 - (4주후) 재취업활동 제출, 구직급여 28일분 지급

□ 신속한 재취업지원서비스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희망직종, 근무이력, 희망근무지역 등을 고려한 적합한 일자리를 적극 알선하여 조기 재취업을 지원
 - 필요 시, 부산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 경남지역을 포함한 광역단위 일자리 알선 실시
 - 부산고용센터는 8월부터 월 1회 광역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1350

12 취업성공패키지

□ 개요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단계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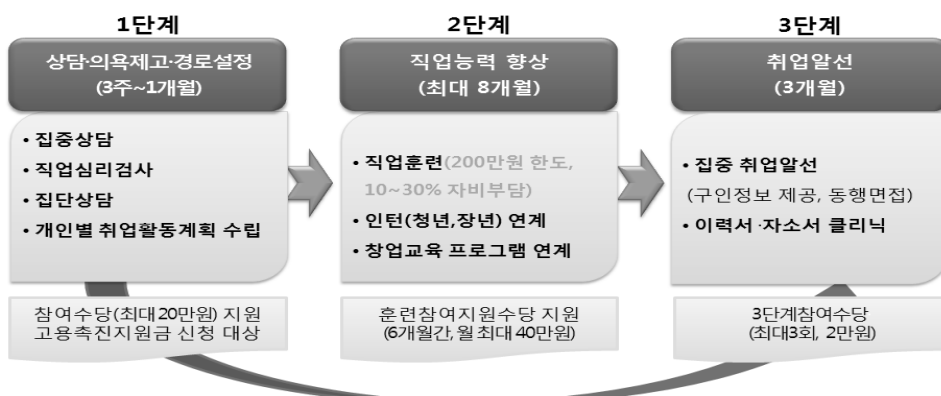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조선업종에서 고용조정으로 퇴직한 근로자, 다만,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조선 포함),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제외
- 사내협력사(대형 3사의 사내협력사도 포함)에서 고용조정된 근로자
- 지정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도급을 받은 사업으로서 매출액의 1/2 이상이 지정 업종과 관련된 기업에서 근무하다 경영악화에 의한 고용조정으로 실직한 근로자

□ 지원내용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취업성공패키지 II 유형 참여 가능
 - * 취업성공패키지 II 중장년층(35세~64세)의 경우 소득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미적용

□ 지원(신청) 절차



- 취업성공패키지 참가신청서 제출 및 구직등록(고용센터) → 참여자격 확인 및 상담(고용센터) →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 결정 및 위탁기관 배정(고용센터) → 취업상담 및 진로설정(민간위탁기관) → 직업훈련 등 참여(신청인) → 집중 취업알선(고용센터, 민간위탁기관)

《문의처》

부산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과 ☎ 051-860-2001, 2005
 부산동부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팀 ☎ 051-760-7119, 7180
 부산북부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팀 ☎ 051-330-9867, 9869, 9887

부산중소기업청

1.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39
2. 사업전환 촉진지원	41
3. 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원	43
4. 제2금융권 대출 저금리 정책자금 전환 지원	45
5. 소상공인 사업전환 및 신규창업 지원	47
6. 조선기가재 지역대책반 설치·운영	49
7.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50
8. 비즈니스 지원단 애로 상담 및 현장클리닉	51
9.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지원	52
10.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53
11.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54
12.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55
13.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56
14.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57
15.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58
16.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59
17.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60
18.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61

1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1. 사업 개요 (목적)

- 대기업 구조조정, 재해, 환율변동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일시적인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

2. 지원 대상·요건

- 대기업 구조조정,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영애로 사유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 조선업 등 구조조정 관련 피해 협력기업*에 대해서는 용자가 제한되는 경우 (국세 체납기업**, 우량기업, 최근 3년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에서 제외
 - *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 기업 여부에 관계없이 중기청이 자체적으로 검토·인정하는 기업
 - ** 단, 국세청에 세금 납부가 유예된 경우에 한함
- 지역 소공인 (제조업)은 지원 가능하나, 중진공 용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 가능함

3. 지원 내용

- 기업별 10억원 이내 (운전자금),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대출금리 : 3.52% (기업신용도,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적용)

4.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 용자신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www.sbc.or.kr)에 접속하여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
 - 중진공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가진단 후 관할 지역본(지)부를 방문하여 사전상담을 진행
- 신청이후 기업평가를 통해 용자여부를 결정하고, 용자약정 체결 후 대출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 ☎ 051-630-7431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동부지부 ☎ 051-784-3624

Q1> 지원 요건에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이라는 요건이 있는데, 정확한 비교 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 직전년도와 직전전년도, 신청 전월과 전년 동월, 신청월 전분기와 전년 동분기, 신청 전월과 전전월, 신청월 전분기와 전전분기 중 하나 이상이 지원 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원 가능함

* (신청기한)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 후 6개월 이내

Q2> 지원대상·요건에 적시하지 않은 다른 사유로 경영애로가 발생한 기업은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 조선업 구조조정, 재해 등 외부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영애로는 지원이 가능하나, 중소기업 내부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경영애로는 지원이 어려움

Q3> 조선업이 아닌 타 업종으로 새롭게 진출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시설 자금을 신청하고 싶은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아 공장을 지을 수 있나요? 지원 한도가 10억원인데 추가로 받을 수는 없나요?

- 업종전환이나 업종추가를 위해 자금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아닌 사업전환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동 자금의 용자한도는 45억원(지방기업 50억원)으로 시설자금, 운전자금 모두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전환기업으로 승인을 받은 후 사업전환자금 지원이 가능함

* (업종전환) 영위업종 사업용 자산 양도·폐기 → 새로운 업종으로 100% 전환

* (업종추가) 현재 영위업종에 새로운 업종 추가(추가 업종 30% 이상)

2 사업전환 촉진지원

1. 사업 개요 (목적)

- 사업전환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2. 지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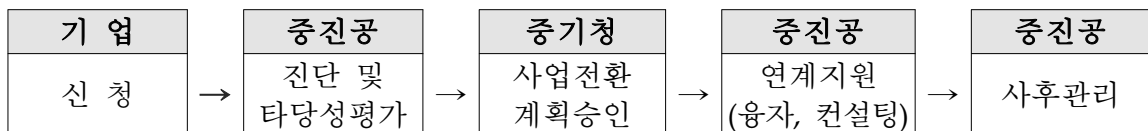
- (대상)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등 중소기업
- (요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며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

3. 지원 내용

- 사업전환지원센터에서 사업전환 전반에 대한 상담 제공
- 사업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중기청에 승인을 득한 업체에 자금, 세제 혜택 등 제공
 - (자금) 중진공 직접대출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기업당 최대 70억원)
 - (세제) 수도권 외 지역에서 업종전환·업종추가*시 신규사업 소득의 법인세·소득세를 4년간 50% 감면 (조특법 제33조의2)

4.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 (승인절차)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3년간 사업전환계획 이행



- (자금지원) 사업전환계획 승인 후 자금 융자신청 : 중진공 해당 지역본부 상담 후 사업전환 융자신청서 작성·온라인 신청(www.sbc.or.kr)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 ☎ 051-630-7431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동부지부 ☎ 051-784-3624

Q1> (사업전환계획 승인 신청대상) 현재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제조업으로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이 가능한가요?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09.3)에 따라 신청 가능함

현 영위업종	전환 진출업종
모든 업종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제외)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에서 중소기업 용자공고에서 제외되는 업종 외의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으로 전환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 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gambling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서비스업 :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

*** 제조업 중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소매업 중 주류, 담배 도소매업 등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www.sbc.or.kr) 용자공고 별표1 (p.37~38) 참고

Q2> (사업전환계획 승인 제외대상) 사업전환계획 업종의 매출액이 발생하였는데, 사업전환계획 승인 제외대상인가?

- 승인신청일 현재 사업전환계획 업종의 최초 매출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자는 승인 제외대상임. 단, 승인신청일 현재 시제품 또는 내부사용 제품으로 개발하여 전체 매출액의 5% 이내인 경우는 매출로 미간주함

3 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원

1. 사업 개요 (목적)

- 조선업 밀집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일반경영안정자금 우선 지원

* 울산, 부산, 거제 (통영), 창원, 군산, 영암 (목포)

2. 지원 대상·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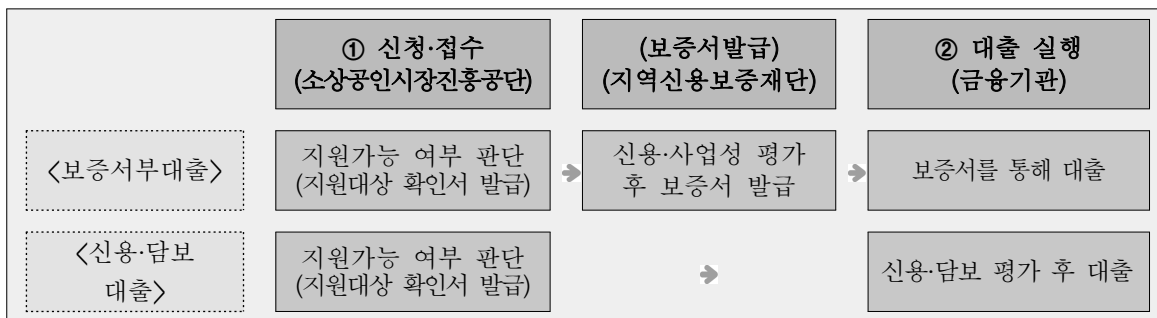
- 조선업 밀집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력 3개월 이상**의 소상공인
- 유흥·향락 업종, 전문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3. 지원 내용

- 최대 7,000만원 용자, 2년 거치 3년 분할, 금리 2.47% ('16.2Q 기준)

4.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 (신청방법) 관할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자금 상담 후 신청
- (지원절차)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용자신청·접수 및 용자대상 확인 후, 금융기관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5.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대표전화 (1588-5302)

지 역		관할 센터	연 락 처
부산	북구, 사상구, 강서구	부산북부센터	(051) 341-8052
	부산진구,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부산남부센터	(051) 633-6562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부산동부센터	(051) 761-2561
	중구, 영도구, 서구, 사하구, 동구	부산중부센터	(051) 469-1644

6. 참고사항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90일이며, 유효기간 내에 금융기관 대출신청이 이루어져야 함

Q1> 유흥·향락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과 자금신청가능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을 때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 주된 사업의 업종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이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4 제2금융권 대출 저금리 정책자금 전환 지원

1. 사업 개요 (목적)

- 조선업 밀집지역* 소상공인이 보유한 제2금융권 대출을 저금리 정책 자금으로 전환

* 울산, 부산, 거제 (통영), 창원, 군산, 영암 (목포)

2. 지원 대상·요건

- 제2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DTI* 60% 이내의 중간 신용등급 (4~5등급) 소상공인

* DTI : 총부채 상환비율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인정소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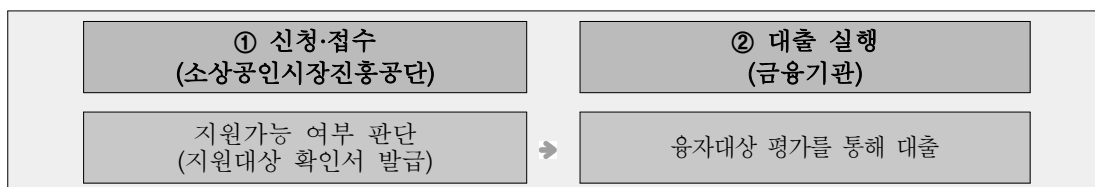
- 제2금융권에서 대출 후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어야 함
- 유흥·향락 업종, 전문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3. 지원 내용

- 최대 7,000만원 용자, 2년 거치 3년 분할, 금리 5%

4.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 (신청방법) 관할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자금 상담 후 신청
- (지원절차)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용자신청·접수 및 용자대상 확인 후, 금융기관에서 대출



5. 문의

- 소상공인지원진흥공단 (지역센터) 대표전화 (1588-5302)

	지 역	관할 센터	연 락 처
부산	북구, 사상구, 강서구	부산북부센터	(051) 341-8052
	부산진구,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부산남부센터	(051) 633-6562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부산동부센터	(051) 761-2561
	중구, 영도구, 서구, 사하구, 동구	부산중부센터	(051) 469-1644

6. 참고사항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이며, 유효기간 내에 금융기관 대출신청이 이루어져야 함

Q1> 제2금융권 대출 확인방법은?

- “제2금융권”이란 제도권 금융기관 중,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제도권금융기관」에서 조회 가능한 경우, 제2금융권에 해당(은행은 제1금융권으로 제외)

5 소상공인 사업전환 및 신규창업 지원

1. 사업 개요 (목적)

- 소상공인 사업전환 및 신규창업 지원을 통한 성공적인 시장 진입

2. 지원 대상

- (소상공인컨설팅)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 (창업지원) 예비창업자 또는 소상공인

3. 지원 내용

- (사업전환) **컨설팅** (컨설턴트비 日 최대 25만원씩 5일 이내, 자부담 10%), **교육** (60시간 이내)을 지원하고, **교육수료 후 소상공인 사업전환자금** (1억원 한도) 연계 지원
- (창업지원)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사업 사업화교육** (60~80시간, 무료)을 실시하고, 수료생 중 공모를 통해 **사업화자금** (최대 1천만원, 자부담 50%) 지원

4.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 (**컨설팅**) 소상공인 컨설팅 홈페이지 (<http://con.sbiz.or.kr>) 접속 → 회원가입 → 메뉴의 [컨설팅]-[나의 컨설팅]-[신청하기] 클릭 → 신청서 필수내용 입력 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동의함' 클릭 → [신청완료] 클릭
- (**재창업 및 신사업 사업화 교육**) 소상공인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 신사업사업화교육/재창업패키지교육 → 지역별 교육기관 및 일정 검색 → 원하는 '교육과정' 클릭 → 세부 내용 확인 후 하단에 '신청하기' 클릭

5.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대표전화 (1588-5302)

지 역		관할 센터	연 락 처
부산	북구, 사상구, 강서구	부산북부센터	(051) 341-8052
	부산진구,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부산남부센터	(051) 633-6562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부산동부센터	(051) 761-2561
	중구, 영도구, 서구, 사하구, 동구	부산중부센터	(051) 469-1644

Q1> 기존사업자도 교육을 수강할 수 있나요?

- 신사업사업화교육은 예비창업자 및 기존사업자도 교육수강 가능하고 재창업패키지 교육은 업종전환예정자 또는 폐업자만 가능합니다.

Q2> 교육 후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자금이나 혜택은 무엇인가요?

- 재창업패키지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전환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신청 가능하고 거주지역 또는 사업자등록증 소재지의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자금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사업사업화교육 수료 후 사업화 관련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하고 신사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3> 교육 이수기준과 자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 전체 교육시간의 90% 이상을 참여하셔야 합니다. 또한 교육생 자부담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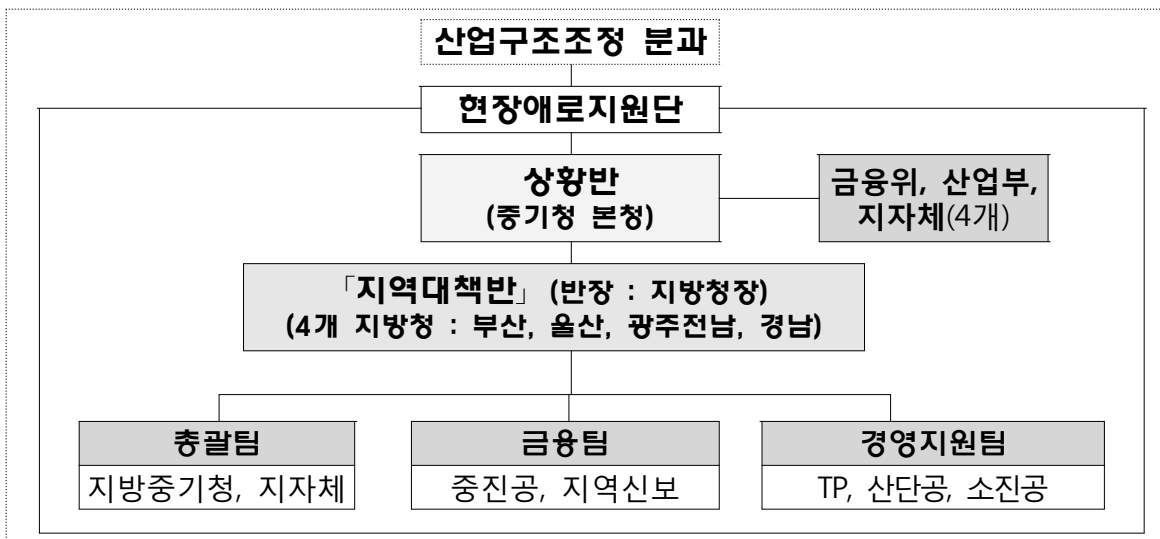
6 조선기자재 지역대책반 설치·운영

1. 사업 개요 (목적)

- 정부는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하여 실업자, 조선기자재 기업을 지원
- 체계적인 조선·기자재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부산중기청에 '조선·기자재 지역대책반'을 운영

2. 조선·기자재 지역대책반 구성 및 운영

- 부산중기청에 대책반을 설치(반장 : 부산청장)하고 부산시, 중진공 등 지원기관과 '업무협조망'을 구축하여 조선업 관련 현안 및 애로 해결
- ** 유관기관 전담자 지정 및 상호 Hot line을 구축



- (기능) 조선·기자재 기업 애로 접수 및 해결, 실태조사
 - 조선·기자재 기업에서 제기한 애로는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해결
 - 즉시 해결이 힘든 애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중기청 본부에 이송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해결

《문의처》

부산지방중소기업청 조선·기자재 지역대책반 ☎ 051-601-5188, 5139
중소기업청 조선·기자재 현장애로지원단 ☎ 042-481-4542, 4504

7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목적)

- 중소기업의 자체부담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컨설팅에 대해 그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지원하는 사업

2. 지원대상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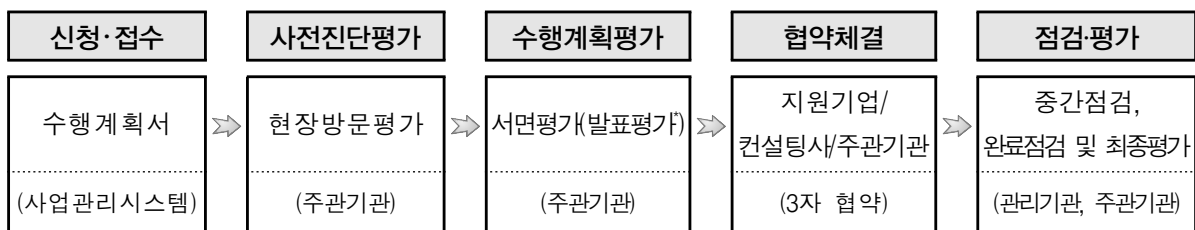
① 지원대상 및 내용

구 분	지원 대상	컨설팅 내용
경영·기술 컨설팅	업력·업종 제한 없음	경영·기술 전 분야 (경영전략, 인사조직, 마케팅/영업, 재무/회계, 고객만족, 글로벌경영전략(FTA), 생산혁신, 품질, 정보기술, 에너지/녹색경영, R&D, 사업전환 등)

② 지원조건

TRACK	정부지원금		정부지원비율	수행기간
경영·기술 컨설팅	업력 7년 초과	최대 30백만원	과제 규모에 따라 30 ~ 50%	최대 6개월/년 (2개월/년 추가연장 가능, 1회)
	업력 7년 이내	최대 20백만원	정부 65%	

3.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문의처》

부산지방중소기업청 기업환경개선과 ☎ 051-601-5135
 중소기업진흥공단 동부권경영지원처 ☎ 053-560-4616
 (사)한국컨설팅서비스협회 컨설팅사업부 ☎ 02-553-3808

8 비즈니스 지원단 애로 상담 및 현장클리닉

1. 사업 개요 (목적)

-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금융·법률·마케팅·기술 등 애로사항을 비즈니스 지원단과의 상담·현장클리닉을 통해 해결

* 비즈니스 지원단 : 중소기업 경영애로를 해결해 주기 위해 각 지방중소기업청 및 사무소에 배치된 변호사, 세무사, 관세사 등 10개 분야의 전문가

2. 지원 대상

- 전문상담(전화·방문) :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임·직원, 중소기업 관계자 등 모든 중소기업 관련자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유흥오락업 등의 업종은 제외)

3.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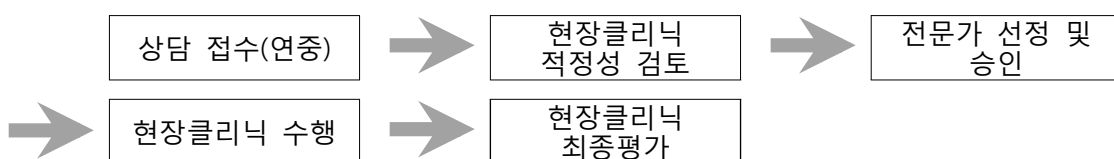
- 전화상담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를 통해 기업의 경영상 애로를 전화로 무료상담
- 방문상담 : 전화 상담을 통해 해소되지 못한 경우 상담위원이 직접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단기(1~2일)에 애로 해소
- 현장클리닉 : 전화·방문상담을 통해 애로사항 해소가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상담 분야에 따라 1~7일의 기간 동안 현장클리닉 진행
- 기업당 1일 35만원(기업부담금* 30% 또는 10%)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중 50인 미만의 소기업은 30%,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은 10%

** 상담·클리닉 분야는 창업/벤처, 법무/규제, 금융/환위험관리, 인사/노무, 세무/회계, 경영전략, 기술/특허, 정보화/융합기술, 생산관리, 마케팅/수출입

*** 기업당 연간 합계 최대 5회, 동일분야는 연간 최대 2회까지 가능

4.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문의처》

부산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 051-831-1357

9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지원

1. 사업 개요 (목적)

- 수출실적 100만달러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첫 수출 준비활동 및 해외시장 진출 마케팅활동을 지원하여 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2. 지원 대상요건

- 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 미만의 기업(간접수출포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
 -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제조업·제조관련서비스업 및 「산업발전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

3. 지원 내용

- 기업의 수출역량에 따라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으로 구분하여 무역교육, 홍보디자인, 해외시장정보 등을 패키지지원
-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2,500만원 지원

구분	사업군	세부사업
수출준비 사업	무역교육	온라인 무역교육
	외국어 홍보·디자인	종이카탈로그, 전자카탈로그, 동영상, 포장디자인, 모바일 앱·웹, 인터넷 홈페이지
	무역활동 대행	시장조사, 신용조사, 전시마케팅 대행, 사업파트너 연결
수출마케팅 사업*	마케팅	국제전시회(개별), 무역전문지, 해외 광고(케이블TV), 검색엔진마케팅, 온라인키워드광고
공통	기타	무역보험, 환변동보험, 내일채움공제

4.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 온라인 신청
- 신청(1월) → 글로벌역량평가(2월) → 선정·지원(~12월)

《문의처》

부산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1-601-5165

10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1. 사업 개요 (목적)

- 해외에서 중소기업 제품의 신뢰도를 높여 수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수출대상 국가에서 요구하는 CE, FDA 등 해외규격인증마크 획득 비용 지원

2. 지원 대상·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수출실적 5,000만불 미만 기업
- (우대지원대상) 창업초기기업이 2회 이상 신청 후 탈락한 경우 별도의 기술평가를 통해 우대지원

3. 지원 내용

- 275개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인증비, 공장 심사비, 컨설팅비용 등의 50~70% 지원

〈분야별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금액 : 천원)

지원분야	출연금한도			컨설팅 소요비용 한도
	최대한도	전년도 매출30억원 이하	전년도 매출30억원 초과	
· 일반규격인증	30,000	70%	50%	지원규격· 제품별로 상이
· 고부가가치인증	50,000	70%	50%	4,400

4.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 (신청방법)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연간 5회에 걸쳐 신청 및 평가(2월, 4월, 6월, 8월 10월 신청)

《문의처》

(신청 및 평가관련) 부산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1-601-5161
 (일반해외규격인증) 한국산업기술시험원 ☎02-860-1312~3
 (고부가가치 및 중국인증)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02-2164-0172~6

11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1. 사업 개요 (목적)

-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중기청, 중진공 등 23개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집중 육성

2. 지원 대상·요건

-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전년도 또는 신청년도 수출실적이 500만불 미만인 기업(간접수출실적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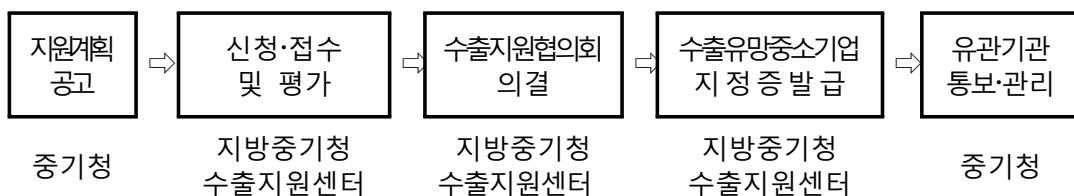
3.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지정후 2년간, 23개 수출지원기관 사업 참여 우대

- ◆ 수출지원 사업참여 우대 : 중기청, 방사청, 중진공, 무협, kotra 등 8개 기관
- ◆ 수출금융 및 보증지원 우대 : 무보, 수은, 신보, 기보
- ◆ 금리 및 환거래조건 등 우대 : 중소기업은행 등 11개 금융기관

4.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 (신청방법)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 온라인 신청
- (지원절차) 매년 2회(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 공고



《문의처》

부산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1-601-5165

12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 사업 개요 (목적)

- 성장잠재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기업 및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의 생존율 제고 및 성장기반 강화

2. 지원 대상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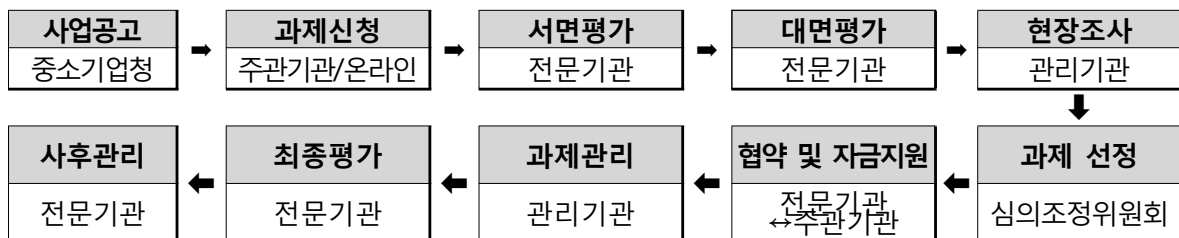
- ① **창업기업과제(1,684억원)** : 창업 후 7년 이하이고 상시 종업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 **창업과제(1,122억원)** : 성장 잠재력은 우수하지만 사업화 능력 및 경험이 부족한 창업기업 기술개발 지원
 -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과제(457억원)** : 엔젤투자사의 투자·보육·멘토링을 조건으로 기술창업팀(2인 이상)의 기술개발 지원
 - **여성참여활성화과제(105억원)**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여성기업 및 여성연구인력 고용기업 등의 기술개발 지원
- ② **1인창조기업과제(204억원)** : 창업 후 7년 이하인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

3. 지원 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창업 기업 과제	창업과제	최대 1년, 2억원	80% 이내	자유 응모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최대 2년, 5억원		
	여성참여활성화과제	최대 1년, 1억원		
1인 창조기업과제		최대 1년, 1억원		

4.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문의처》

부산지방중소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 ☎ 051-601-5150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331, 0333

13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1. 사업 개요 (목적)

- 중소기업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을 지원해 R&D 역량 부족 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

2. 지원 대상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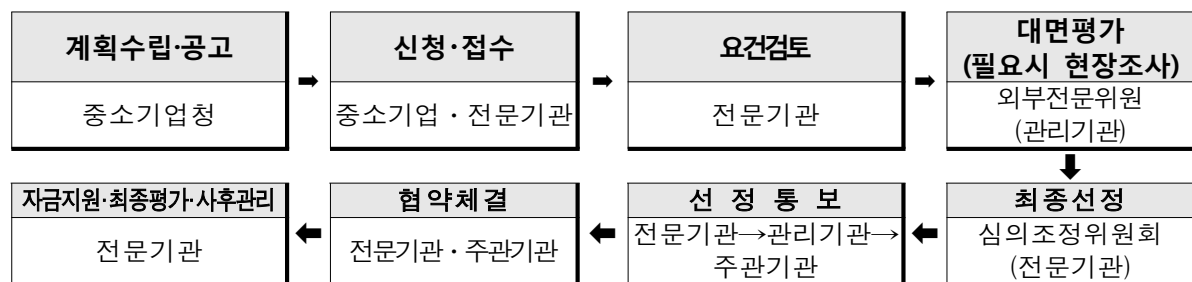
- ① 제품·공정개선(268억원)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개선 및 공정개선 분야 기술개발을 지원
- ② 뿌리기업 공정개선(59억원) : 뿌리기술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품적용 기술 및 뿌리기술 고도화를 위한 공정기술 개발 지원
- ③ 현장수요형(50억) : 지역별·업종별 특성 및 시장수요에 따른 지역별 특화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제품개선 기술개발 지원

3. 지원 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최대 9개월, 0.5억원	75%이내	자유응모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	최대 1년, 1억원	75%이내	자유응모
현장수요형기술개발	최대 1년, 1억원	75%이내	자유응모

4.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문의처》

부산지방중소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 ☎ 051-601-515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61~3

14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1. 사업 개요 (목적)

-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능력 제고 및 혁신기술의 사업화 촉진

2.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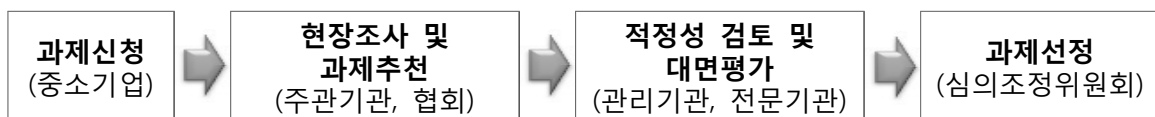
- ① **첫걸음 R&D(478억원)** :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하여 기술개발 지원
- ② **도약 R&D(853억원)** : 기술혁신 역량 부족, 성장정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기술개발 지원
- ③ **이공계전문가 R&D서포터즈(51억원)** : 이공계전문가를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의 당면 기술애로 진단·해결 지원

3. 지원 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① 첫걸음 R&D	첫걸음	최대 1년, 1억원	75% 이내 (지자체 지원금 포함)	자유응모
	부설연구소 신규설치	최대 2년, 2억원		
② 도약 R&D	도약	최대 1년, 1억원	75% 이내	
	연구마을	최대 1년, 1억원		
	산연전용	최대 1년, 1.5억원		
③ 이공계전문가 R&D서포터즈	진단	최대 1월, 1백만원	100%	
	해결	최대 4월, 2천만원	75% 이내	
	전담	최대 1년, 3천만원		

4.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문의처》

부산지방중소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 ☎ 051-601-5144

15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1. 사업 개요 (목적)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개방형 R&D 협력체(산·연, 산·학, 산·산)의 異種기술간 융합R&D를 통한 신기술·신제품·신시장 창출 지원

2.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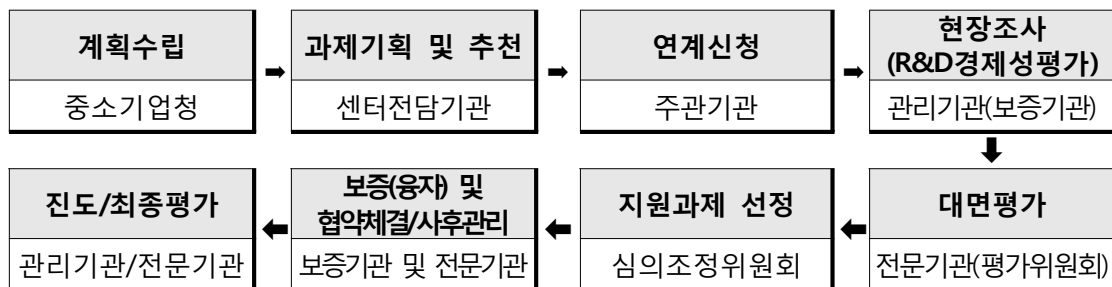
- ① **융합전략과제(340억원)** : 기술수요조사, 연구용역 등을 통해 발굴된 첨단 융·복합기술 분야의 과제개발 지원
- ② **현장기획과제(565억원)** :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제안한 기술을 중소기업 융합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과제기획을 지원하고 우수과제는 융·복합기술개발 과제로 지원

3. 지원 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융합전략과제	최대 2년, 6억원	65%이내	지정공모
현장기획과제	최대 2년, 6억원	65%이내	자유응모

4.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n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문의처》

부산지방중소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 ☎ 051-601-515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223, 0224

16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1. 사업 개요 (목적)

- 국내·외 수요처 및 투자기업(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2. 지원 내용

- ① 수요조사과제 : 국내·외 수요처에서 개발을 제안한 과제 또는 단일과제에 다수의 수요처(조합, 단체, 병원 등)가 참여한 공동구매 과제 등
- ② 기업제안과제 :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나 개발기술을 국내·외 수요처에 제안하여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해외는 구매계약서 등)를 받아 제안한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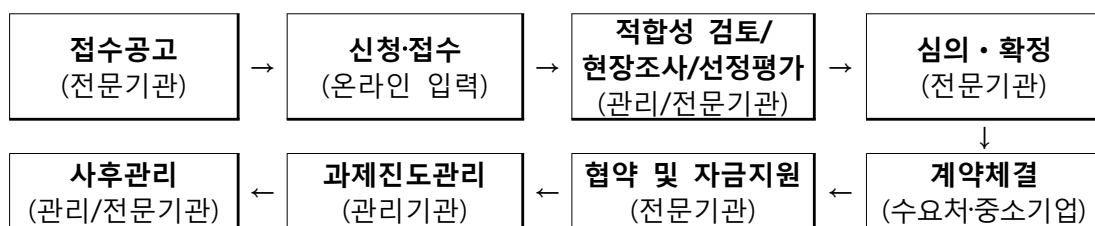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해외수입처(바이어) 신용등급 E등급 이상만 지원 가능
(해외수요처 신용등급 조사 시 약 4주 소요)

3. 지원 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구매 조건부	수요 조사	국내	민간 공공	최대 2년, 5억원	55~65%
		해 외 (글로벌협력)			
	기업 제안	국내	민간 공공	최대 2년, 5억원	55~65%
		해 외		최대 2년, 5억원	
민관공동투자	수요조사 기업제안		최대 2년, 10억원	65% 이내	

4.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문익서》

부산지방중소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 ☎ 051-601-517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15, 0713, 0717

17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1. 사업 개요 (목적)

- 글로벌 전략품목 및 미래 성장유망 분야 등의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 창출 및 사업화 촉진

2.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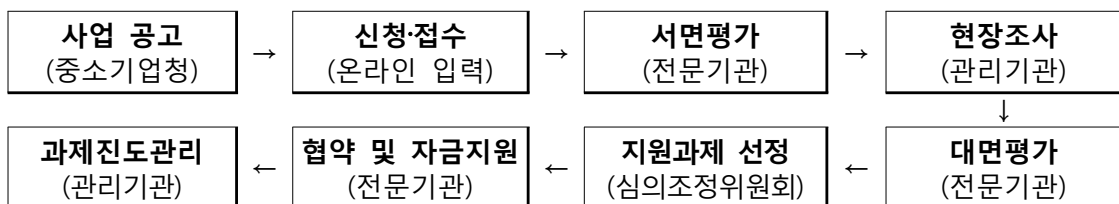
- ① **글로벌전략기술개발(636억원)** :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선도적 투자(First mover)를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 촉진
- ② **혁신기업기술개발(1,525억원)** : 빅데이터, 컴퓨터 S/W, IoT(사물인터넷) 등 창조산업, 투자유망 및 첨단융합 분야 등 중소기업형 미래 유망분야 지원
- ③ **기업서비스연구개발(99억원)** : 제품과 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창의적인 제품개발 및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3. 지원 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글로벌전략기술개발	최대 2년, 6억원	65%이내	자유응모, 품목지정
혁신기업기술개발	최대 2년, 6억원	65%이내	품목지정
기업서비스연구개발	최대 1년, 1.5억원	65%이내	자유응모

4.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문의처》

부산지방중소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 ☎ 051-601-514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312~0322

18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1. 사업 개요 (목적)

- 실패 위험성은 높으나 R&D 성공시 새로운 시장 개척 및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창의·도전적 과제 집중 발굴 지원

2. 지원 내용

- 창의·도전적 기술혁신을 통해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제품 개발 지원
 - * 중소기업에 적합한 전략분야 품목(제품군)을 제시하고, 제시된 품목(제품군)에 한해서 과제 신청·접수 및 지원
 - * 혁신·도약형R&D 사업으로, 창의도전성을 중점 평가하고 무빙타겟제 (Moving target) 운영을 통해 시장상황에 따른 목표변경 등을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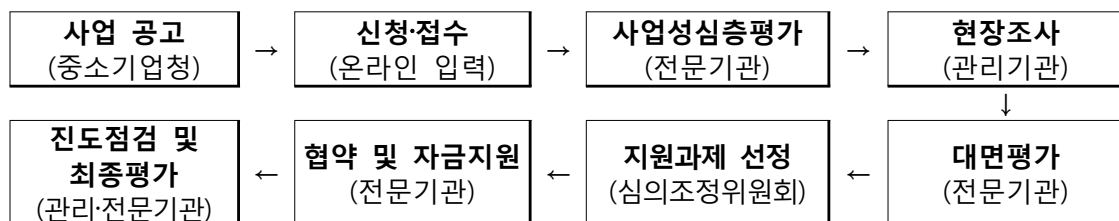
3. 지원 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최대 2년, 8억원	65%이내	자유응모

* 총 2년간 최대 8억원(R&D 1년, 4억원 + 사업화 1년, 4억원)을 지원

4.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문의처》

부산지방중소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 ☎ 051-601-517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2-3787-0503

부산광역시

1. 중소기업 자금 지원사업	65
2.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67
3.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및 수출지원사업	68
4. 일자리지원센터 설치·운영<근로자>	69
5. 퇴직자 취업 및 훈련 지원사업<근로자>	71
6. 실직자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근로자>	72

1 중소기업 자금 지원사업

□ 조선·해운 중소기업 중소기업 운전자금 확대 지원

- 지원대상 : 조선기자재·해운업 등록업체
- 지원규모 : 업체당 5억원 이내
- 상환기간 : 3년 거치 일시상환
- 이 자 율 : 은행금리-이차보전율(업체당 1.5%~2.5%)
- 문 의 처 : 부산경제진흥원(☎600-1711)

□ 조선·해운산업 특례보증 지원

- 지원대상 : 조선기자재·해운업 등록업체
- 보증금액 사정한도 : 연매출의 1/2까지
- 총 차입금 한도 : (제조업) 연매출의 100%이내, (기타업종) 연매출의 70%이내
- 보증료 : 신용보증료에서 0.2% 차감
- 문 의 처 : 부산신용보증재단(☎860-6600)

□ 조선·해운업체 실직자 창업 특례보증 지원

- 지원대상 : 조선·해운업체 실직자 중 소자본 창업자
- 보증규모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보증료율 : 0.5%(고정) ※ 은행 대출금리 : 3% 이내
- 문 의 처 : 부산신용보증재단(☎860-6600)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 지원대상 : 부산 소재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지원조건 : 15억원 이내(향토기업 : 20억원), 3년거치 5년 분할 상환
- 대출금리 : 연3.7%(변동) > 기업부담 2.9%, 이차보전 0.8%(우대 +0.3%p)
- 지원시기 : 짝수월(2.4.6.8.10월) 1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 접수기관 및 방법 : 부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접수

□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 지원대상 : 부산 소재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지원조건 : 4억원 이내(향토기업 : 5억원), 3년거치 일시상환
- 대출금리 : 개별금리 ▶ 이차보전 1.0~1.5%(우대 2.5%)
- 지원시기 : 홀수월(1.3.5.7.9월) 1일부터 구.군별 1일간
- 접수기관 및 방법 : 부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접수

□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

- 지원대상 : 본사나 주사업장이 부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대상업종 : 모든 업종
- 지원한도 및 조건
 - 신청기간 : 연중
 - 보증한도 : 업체당 8억원이내
 - 보증수수료 : 연 1%내외($\pm 0.5\%$ 신용도에 의한 차등적용)
 - 보증기간 : 대출기간이내
 - 접수처 : 부산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각 지점

□ 기업애로 해소 지원

- 기업애로 전용 핫라인 운영
 - 부산경제진흥원 원스톱기업지원센터(☎1577-0062)
- 기업옴부즈맨 운영
 - 기업관련 규제 및 애로사항 현장방문 접수처리(☎888-6492)
- 불합리한 규제 신고 안내
 - 규제개혁 신문고(www.better.go.kr), 규제개혁 애로신고(www.osmb.go.kr)

□ 중소기업 상품 홈페이지 운영

- 게재대상 : 부산 소재 중소기업 생산 상품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products.co.kr> (FAX 600-1801)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신청(연중가능)
- 문의전화 : 부산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센터(☎600-1711)

2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 지원 대상

- 조선 산업 위기에 따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조선업체

□ 지원 종류

- 기한연장 :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을 6개월(최대 1년까지) 범위 내 연장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5조·제6조
- 징수유예 :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체납처분 등을 6개월(최대 1년까지) 유예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80조 및 시행령 제67조
- 세무조사 유예 :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진행 중인 세무 조사는 중지 또는 유예 등 적극 지원(다만, 부과제척 기간 만료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11조 및 시행령 제92조

□ 지원 방법

-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첨부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승인 신청서」 및 「징수유예 등의 신청서」를 구·군에 제출하면, 과세권자가 피해사실을 검토 후 결정

《문의처》

부산광역시 세정담당관실 051-888-2131, 구·군 세무과

중 구 청 600-4182	서 구 청 240-4182	동 구 청 440-4181	영도구청 419-4182
부산진구청 605-4235	동래구청 550-4181	남 구 청 607-4181	북 구 청 309-4181
해운대구청 749-4181	사하구청 220-4182	금정구청 519-4182	강서구청 970-4182
연 제 구 청 665-4182	수영구청 610-4184	사상구청 310-4181	기장군청 709-4181

3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및 수출지원사업

□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부산 조선기자재업체(공모선정)
- 공모기간 : '16. 7. 20 ~ 8. 10.
- 지원내용 : 제품 기술인증 등 업체당 6백만원 이내(20개 업체)
 - 육상용 기술전환을 위한 공인시험평가 지원
 - ▷ 건축, 철도, 기계, 부품, 정보통신산업 등 각종 육상용 제품개발 지원
 - ▷ 시제품 개발 및 예비시험(Pre-test) 지원, 시험규격 및 시험방법 컨설팅
 - 육상용 및 해상용 기자재의 규격인증 획득 및 통합 컨설팅 지원
 - ▷ 유럽통합인증(CE), 미국보험협회 안전시험소 인증(UL) 등 해외인증 지원
 - ▷ 해외기술 동향을 접목할 수 있도록 표준에 대한 기술 정보 지원
 - ▷ 인증획득에 필요한 핵심기술요소 추출 및 컨설팅
 - 조선해양기자재업계 사업 전환 및 확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
 - ▷ 국내외 각종 박람회, 전시회 참가 지원
 - ▷ 사업다각화를 위한 교육훈련, 세미나, 포럼 참석 지원
- 문 의 처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400-5111)

□ 조선기자재 해외현지 수출상담회 [시장개척단]

- 지원대상 : 국내 조선기자재업체 약 20개사 (공모선정)
- 공모기간 : '16. 8 ~ 9월
- 지원내용 : 참가 업체당 1백만원 이내(항공, 숙박 및 공동차량 등)
- 시행시기 : 2회
 - '16. 10월경 (싱가포르), 11월경 (중국 상해)
- 문 의 처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글로벌지원센터(☎972-6474)

4 일자리지원센터 설치·운영('16.8월~)<근로자>

□ 조선기자재업체 밀집지역 현장일자리지원센터 설치·운영

- 위 치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4층 '서부산권 잡(Job) 카페' 내
- 내 용
 - 상담을 통한 취업지원 수요(취업·훈련·창업) 파악, 맞춤형 취업상담·알선, 재취업 역량강화 교육 및 창업프로그램 안내 등
- 근무인력 : 4명(상담사 2, 고용디자이너 2) * 실업자 발생규모에 따라 적의 조정
- 운영방법 : 개별 상담을 통한 취업·훈련·창업 수요에 대응
 - 취업희망자 ⇒ 취업 상담 후 구인·구직 매칭·알선
 - 훈련희망자 ⇒ 훈련 상담 후 고용부, 市 맞춤형훈련 참여 안내
 - 창업희망자 : 부산창업지원센터 연계 ⇒ 창업지원
 - ▷ 업종별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창업교육, 창업관련 유관기관 지원사업 안내 등
- 문 의 처 : 부산경제진흥원(☎ 600-1783)

□ 市 일자리종합센터 내 '조선업종 퇴직자 지원 창구' 설치 운영

- 위 치 : 시청역 지하철 연결 통로(舊테즈락 공간)내
- 내 용
 - 원스톱서비스 제공 : 지원시책 안내, 상담, 직업훈련 연계, 취업알선
 - 찾아가는 현장설명회, 조선업종 채용행사, 구인개척단 활용 등 구인 발굴
 - 시·구·군 등 기관 홈페이지, 전광판, 소식지를 통한 홍보
- 문 의 처 : 부산일자리종합센터(☎ 888-6911~8)

□ 부산상공회의소 내 '고용위기 극복, 고용안정특별지원센터' 운영

- 사업대상 : 조선(기자재)·해운업 중심 위기업종 구조조정 대상자
 - 고용위기업종 퇴직(예정)자 대상 재취업 지원사업
 - 고용위기업종 종사자 전직 및 재취업 직업훈련
- 문 의 처 : 부산상공회의소(☎ 990-7141~5)

〈참고자료〉

시·구(군) 취업정보센터 현황

소 속		취업정보센터			
		전화	FAX	위치	홈페이지
시청	부산일자리 종합센터 (일자리창출과)	888-6911~8	888-6919	시청 연결통로	지역 워크넷 (busan.work.go.kr)
중구청	경제진흥과	600-4519	600-4479	6층	
서구청	생활지원과	240-6686~7	240-6689	서쪽별관 4층	
동구청	경제진흥과	440-4347~9	440-4239	7층	
영도구청	경제진흥과	419-4329	419-4489	4층(401호)	구군 워크넷 (busan.work.go.kr/yeongdo)
부산진구청	일자리경제과	605-6405~9	605-6429	2층	(busan.work.go.kr/busanjin)
동래구청	경제고용과	550-4936	550-4919	제1별관 5층	(busan.work.go.kr/dongnae)
남구청	경제진흥과	607-4858	607-4349	2층	(busan.work.go.kr/nam)
북구청	경제진흥과	309-4347~8	309-4489	제2별관 1층	(busan.work.go.kr/buk)
해운대구청	일자리창출과	749-4344	749-2909	3층	(busan.work.go.kr/haeundae)
사하구청	경제진흥과	220-5691~4	220-5699	제2별관 1층	(busan.work.go.kr/saha)
금정구청	일자리경제과	519-4471~5	519-4809	별관 2층	(busan.work.go.kr/geumjeong)
강서구청	창조경제과	970-4494~5	970-4499	1층	(busan.work.go.kr/gangseo)
연제구청	경제진흥과	665-4345~8	665-4349	1층	(busan.work.go.kr/yeonje)
수영구청	지역경제과	610-4471~7	610-4479	3층	(busan.work.go.kr/suyeong)
사상구청	일자리경제과	310-5190	310-4619	1층, 6층	(busan.work.go.kr/sasang)
기장군청	일자리과	709-4377	709-2709	1층	(busan.work.go.kr/gijangn)

5 퇴직자 취업 및 훈련 지원사업<근로자>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 훈련대상 : 만15세 이상 미취업자
- 훈련기관 : 7개 기관(인력개발원, 폴리텍대2, 해양대, 동명대, 부경대, 디자인센터)
- 훈련인원 : 6,192여명(실업자 1,400, 재직자 4,792)
- 문의처 : 부산지역인적개발위원회(☎ 990-7056),
부산광역시 일자리창출과 (☎ 888-4412)

□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형훈련

- 훈련대상 : 만18~만53세 이하 부산거주 청·장년 실업자
 - 지원 : 직업훈련기관 훈련비(월 500천원 정도), 훈련생 훈련수당(월 250천원)
- 훈련기관 모집 : 2016. 2월 중순 ~ 3월, 7월 ~ 9월
- 훈련기관 : 자동차정비, 정보통신, 용접 등 50여개 기관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일자리창출과 (☎ 888-4414 / FAX. 888-4399)

□ 청년취업 인턴사업

- 구인기업 범위
 - 부산 : 부산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 5인 미만이라도 벤처지원업,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분야 등은 참여가능
 - 해외 : 부산강소기업 해외지사 및 현지기업, 그 외 사업장
- 참여대상 : 만15세~34세(군필자 만39세), 주민등록상 주소지 부산
- 지원내용
 - 부산 : 인턴 채용기업(3개월간 월100만원 지원), 정규직 전환시(최대 3개월 추가지원),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년 이상 근속한 인턴에게 100만원(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 해외 : 취업 인턴에게 항공료·체재비 300~500만원 지원(국가별 차등 지급)
- 문의 및 신청 : 부산광역시 일자리창출과(☎ 888-4412 / FAX 888-4399)
 - 부산상공회의소(☎ 990-7073 / FAX 990-7185)
 - 부산경영자총협회(☎ 647-0920 / FAX 647-9528)

6 실직자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근로자>

□ 지원 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가구원 중 주소득자가 실직했으나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실업급여를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실직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이고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 선정 기준

- 소득기준: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기준 월1,218천원, 4인기준 월3,293천원)
- 재산기준: 대도시 1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 지원 내용

가구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원/월)	418,400	712,500	921,800	1,131,000	1,340,300	1,549,500

□ 지원 기간: 최대 6개월

□ 지원 절차

- 지원요청 → 현장확인 → 지원결정 및 지급 → 사후조사(1개월 이내)
→ 적정성심사(3개월 이내) → 적정(종료 또는 지원연장), 부적정(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문의처》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과 888-3175, 구·군 긴급지원부서

중 구 청	600-4341	부산진구청	605-6471	해운대구청	749-5756	연제구청	665-4521
서 구 청	240-4334	동래구청	550-4325	사하구청	220-5537	수영구청	610-4347
동 구 청	440-4391	남 구 청	607-4851	금정구청	519-4785	사상구청	310-4662
영도구청	419-4791	북 구 청	309-4424	강서구청	970-4332	기장군청	709-4325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사업	75
2.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80
3. 소액체당금 제도	89

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사업

1 사업목적 및 근거

가. 사업목적

결혼이나 의료비 지출 등 일시에 목돈이 필요하거나 임금감소 및 체불로 생계에 곤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저리의 자금을 융자하여 생활안정 지원 및 근로의욕 고취

나. 사업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 제9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2 '16년 사업추진방향

가. '16년 사업목표

1) 사업목표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16년 예산	목표인원	금액
생활안정자금	100,000	13,857	82,000
임금체불생계비	(복권기금 34,000백만원 포함)	3,600	18,000

※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배정 예산 중 '16년 상반기에 66.2%(662억) 집행 목표

나. 접수기간

- 연중수시접수(2016. 1. 1. ~ 예산 소진 시까지)

3 세부운영지침

가. 용자 대상

-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용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며 월 평균 소득이 중위 소득의 3분의 2 ('16년 239만원) 이하일 것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이고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3인가구 기준 중위 소득: 3,579,019원
- (임금채불생계비) 가동 중인(휴업포함) 임금채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로서 용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채불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 소득 합산)이 4,300만원* 이하일 것
 - 다만,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으로 전년 통계청 「건설업임금실태조사, 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 단가의 75일분 해당 금액 이상 채불된 경우
 -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4,300만원 ≙ 3,579,019원('16년 기준 중위 소득)× 12개월
- (임금감소생계비) 용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이며 용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 소득이 중위 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16년 168만원) 이하일 것

- (소액생계비) 용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며, 임금이 감소한 용자 대상 월 소득이 중위 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16년 168만원) 이하일 것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나. 용자조건

- 용자한도
 -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 1,000만원
 - 1,000만원 범위 내 부모요양비는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자녀학자금은 1자녀 당 연 500만원
 - 소액생계비: 200만원 범위
 - ※ 두 종목 이상 용자 신청 시 신청인 1인당 총 한도액 2,000만원
- 용자조건
 - 이율 : 연 2.5%
 -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
 -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 보증방법 :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 [신용보증료 연 0.9%(임금체불생계비 1%) 별도 부담]
 - 대행금융기관 : 중소기업은행

다. 용자대상자 선발

- 현행 수시(즉시)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6월 이전에 예산집행률이 60%를 초과하여 용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별표1 생활안정자금 용자대상자 선발기준 배점표 상 종합점수 70점 이상자, 소액생계비 용자 신청자 및 임금채불생계비 월 평균소득 239만원 이하자는 예비선발 없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 기준 점수(소득) 미달자는 월 2회(15일 간격) 선발 실시 등 탄력적 선발제 운영

라. 신청 및 처리 절차

- 접수기간
 - 연중수시(2016. 1. 1. ~ 예산소진 시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신청 또는 방문접수
 -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과 같이 방문접수(부모는 한명도 가능)
→ 은행도 방문하여 대출 신청해야 함
 - 관할 :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관할착오라도 접수된 지사에서 처리)
- 선발
 - 상반기는 현행 수시(즉시)선발 방식 유지
 - 선발일정(다만, 용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경우에 한하여 선발제 운영)

〈2016년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예비선발 일정〉

구분	접 수 기 간											
	1.1~15.	1.16~31.	2.1~15.	2.16~28.	3.1~15.	3.16~31.	4.1~15.	4.16~30.	5.1~15.	5.16~31.	6.1~15.	6.16~30.
선발일	1.19	2.2	2.17	3.3	3.17	4.4	4.19	5.3	5.17	6.2	6.17	7.4
구분	접 수 기 간											
	7.1~15.	7.16~31.	8.1~15.	8.16~31.	9.1~15.	9.16~30.	10.1~15.	10.16~31.	11.1~15.	11.16~30.	12월은 잔여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	
선발일	7.19	8.2	8.17	9.2	9.20	10.5	10.18	11.2	11.17	12.2.		

○ 업무처리순서

- **용자신청서 접수**(인터넷 또는 방문) → **담당자 확인**(업종, 규모 적용 및 오류내용 확인) → **본부 예비선정**(수시선발) → **구비서류 제출**(예비선정자에 한함) → **담당자 최종 확인 및 적격결정**(예비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 **보증서 발행 및 통보** → **대출실행**

○ 대출실행절차(기업은행 인터넷뱅킹, 모바일 i-ONE 뱅크)

- 용자대상자는 용자약정 체결기간(**용자결정일 부터 15일**)이내 대출 실행

※ **【붙임 3】** “중소기업은행 인터넷 뱅킹” 및 **【붙임 4】** “중소기업은행 스마트폰 i-ONE 뱅크” 참조

2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가. 사업개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수급기간 종료 포함) 생계곤란 실직자가 장기 직업훈련 참여시 생계비 대부 지원

나. 지원대상

- (대상훈련)4주(28일)이상 <인터넷훈련: 4주(32시간)이상> 훈련
- (비정규직)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을 취득 중인 비정규직근로자로서 연간소득 3,000만원 이하자
- (전직실업자)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을 상실한자로서 연간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초과자 및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제외

다. 대부한도 및 상환조건

- 대부한도액: 1인당 1천만원 이내, 훈련수강 기간 동안 월별 1백만원 한도 분할대부하며, 대부금리 연 1.0%
- 1~3년 거치 3~5년 매월 균등상환 중 신청자 선택

라. 신청 절차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http://welfare.kcomwel.or.kr>)
- (절차)신청서접수 → 구비서류 제출 → 대상자 결정 → 보증서 발행 → 1회차 대출실행(결정일부터 15일 이내) → 2회차 이후 매월 15일 자동 실행(훈련실시 여부, 자격변동 여부 확인 후 결정)

마. 구비서류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신청서 및 서약서
-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국세청)
- 전직실업자: 가족관계증명원,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국세청)

- 붙임 1. 생활안정자금 용자대상자 선발기준 배점표
2.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용자신청서(서식)
 3. 중소기업은행 인터넷뱅킹
 4. 중소기업은행 스마트폰 I-ONE 뱅크

〈붙임 1〉

■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고시) [별표 1] <개정 2015. 00. 00.>

생활안정자금 용자대상자 선발기준 배점표

항목별 배점

①용자종류	배점 (30)	②월평균소득	배점 (20)	③가계 종합소득	배점 (20)	④사업장규 모	배점 (15)	⑤업종	배점 (15)
의료비, 부모요양비	30	중위 소득 40%이하	20	하위 2분위 미만	20	50인 미만	15	1그룹	15
임금감소생계비	24	중위 소득 50%이하	15	하위 3분위 미만	15	50 ~ 100인 미만	11	2그룹	11
장례비	18	중위 소득 60%이하	10	하위 4분위 미만	10	100 ~ 300인 미만	7	3그룹	7
자녀학자금	12	중위 소득 67%이하	5	하위 4분위 이상	5	300인 이상	3	4그룹	3
혼례비	6								

◀가점▶ 비정규직(+5), 북한이탈주민(+3)

※ 월평균소득은 소득자별 소득세법 제19조부터 제21조에 따른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각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과세기간 대비 월할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직전 연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함. 다만, 직전 연도에 현 소속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보수일액”에 30을 곱한 금액을 말함

※ 중위 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 가계 종합소득은 근로자 및 배우자의 “연간소득액”의 합계액을 말함. 다만, 단독 세대의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종합소득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으로 함
 - 배점표상의 가계종합소득 10분위 비교자료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의 연간 자료를 기준으로 함 (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산정)

※ 사업장규모는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가입 자료의 사업장규모를 기준으로 하되, 미가입 상태인 경우 별도의 증명자료 제출

※ 업종은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가입 자료의 업종을 기준으로 하되, 미가입 상태인 경우 별도의 증명자료 제출

※ ⑤ 업종 그룹(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구분	업종	구분	업종
1그룹	C 제조업	4그룹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E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B 광업 P 교육 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그 외 명시되지 않은 기타 업종
2그룹	H 운수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G 도매 및 소매업		
3그룹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F 건설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구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 2010년 상·하반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업별 미충원인원, 부족인원, 미충원율, 부족률 항목에 대한 순위·점수 부여하여 4개 그룹으로 분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 사업 운영과 관련 공단에서는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부터 제22조에 따라 수집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며, 본래의 목적 이외에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신청과 관련하여 귀 근로복지공단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조회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근로복지공단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가. 수집·이용 목적: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대상자 선정

나. 수집·이용할 항목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 재직정보, 고용·산재보험 가입이력
- ▶ 본인 및 배우자의 국세청 소득정보
- ▶ 대법원 가족관계 정보
- ▶ 구비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센터를 통하여 제공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자료

다.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존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 및 이용합니다.(최대 5년)

본인은 위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대상자 선정을 목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본인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신청서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②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제공받는 자: 국가, 지방자치 단체, 고객만족 조사 기관

나.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항목·보유기간

- ▶ 제공할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관련기관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관리, 제도 개선 및 제도 운영 평가를 위하여 조사하는 고객만족 조사
- ▶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고유식별정보, 인적사항, 수혜내역
- ▶ 제공받는 자의 개인 정보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존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 및 이용합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이 동의는 상기내용이 변동되는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도 본인은 개인정보 및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활용과 조회에 대한 동의로 인정합니다.

3.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대부 신청자는 ①,②항과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개인정보는 대부 신청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이름:

(서명 또는 인)

[기 재 요 령]

1. 신청금액은 십만 단위 미만 절사하여 작성해야 하며, 의료비의 경우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① 의료비, 임금감소생계비, 임금채불생계비는 용자한도액 내에서 **실제 사유 발생 금액**으로 신청합니다.
 - ②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소액생계비는 용자 한도액내**에서 신청합니다.
2. 신청인은 신청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의료비, 장례비 용자신청 시는 가족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3. 신청인은 **근로형태에 따라 용자요건을 달리 적용함**으로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서(건설일용 근로자 제외)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구 비 서 류]

1.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공통**
 - 가. 정규직 근로자: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용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한다), 북한이탈주민 확인서(북한이탈주민에 한한다)
 - 나.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용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한다), 북한이탈주민 확인서(북한이탈주민에 한한다)
 - 다.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직전년도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
2. **의료비**
 요양기관 및 의료기관에 납부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비용(진료비 및 약제비 등) 영수증 또는 청구서 사본,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3. **부모요양비**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4. **장례비**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사망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5.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 예식장계약서 사본 또는 청첩장(결혼 예정자의 경우에 한하며, 혼인 후 90일 이내에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6. **자녀학자금**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 증명서
7. **임금감소생계비**
 소득감소사실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소득 감소 이전 3개월 및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
8. **소액생계비**
 소득감소사실확인서(**소액생계비**)(별지 제4호서식), 소득 감소 직전 월 급여명세서, 용자 대상 월(감소한 달) 급여명세서
9. **임금채불생계비**
 - 가. 건설일용근로자: 별지 제3호서식의 임금채불확인서(고용보험피보험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어느 하나의 서류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임금 등·사업주확인서
 - 나. 건설일용근로자 외: 별지 제3호서식의 임금채불확인서, 직전년도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원
 - 다.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직전년도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

※ 직전년도에 현 소속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소득이 없는 등의 이유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용자신청일 이전 3월분 임금대장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대체하고, 소득금액증명원은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전전년도의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대체하고, 직전년도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용자신청일 이전 3개월분 임금대장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대체

(4쪽)

[용자안내]

-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용자대상은 용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일 것)이고 월평균소득이 중위 소득의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임금감소생계비 용자대상은 용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경영상 이유로 인한 조치로 임금이 30% 이상 감소되어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 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 소액생계비 용자대상은 용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 45일 이상일 것)이고 개인사정, 계절사업 등 사업구조상 문제로 임금이 30%이상 감소되어 용자 대상 월소득이 중위 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 임금체불생계비 용자대상은 가동 중인(휴업을 포함한다)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다만,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일 것)로서 용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전년 통계청 「건설업임금실태조사, 개별직종노동단가, 중 하반기 보통 인부 노임 단가의 7.5일분 해당하는 금액)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이 중위소득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다만,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월평균소득」은 소득자별 「소득세법」 제19조부터 제21조에 따른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각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과세기간 대비 월할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급여액(총수입액)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 「연간소득액」은 「소득세법」 제4조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의 연간 합계액으로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하고, 전년도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용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총급여액(총수입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365를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 「월소득」은 소득자별 「소득세법」 제19조부터 제21조에 따른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각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말하며 급여명세서 등으로 확인합니다.
- (삭제)
- 「중위 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 「건설일용근로자」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용자종류	용자요건	신청기한(기간)	한도
의료비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라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비용, 산후조리원 이용에 든 비용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 개시일 부터 1년 이내	1,000만원
부모요양비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모든 비용	진단서 발급일부터 90일 이내	1,000만원 한도 부양자 1인당 년 500만원
장례비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1,000만원
혼례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드는 모든 비용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1,000만원
자녀학자금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일체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1,000만원 한도 자녀당 년 500만원
임금감소 생계비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로 임금이 현저히 감소한 근로자의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경우 1. 경영상 조치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 2.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경영상 조치 이전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	사유 진행 또는 사유 종료일 부터 30일 이내	1,000만원
소액생계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 생계유지에 드는 비용 1.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사업구조상 문제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였을 것 2. 용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달의 월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대상자가 된 날 부터 6개월 이내	200만원
임금체불 생계비	가동 중인(휴업을 포함한다)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다만,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용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	이미 발생한 임금체불 상태 가 해소되기 전으로 체불된 날부터 1년 이내	1,000만원

※ 용자한도: 용자대상 중 2종류 이상 용자신청의 경우에는 1명이 받을 수 있는 총 용자한도액은 2,000만원
 ※ 피부양자: 보수 또는 소득이 없이 근로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 되어 있거나 이에 준하여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받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 이 신청서는 예비선정자 선정을 위한 사전심사신청서로 최종 선정을 위해서는 예비선정자에 한해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적격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①신청서접수 ⇒ ②사전심사(예비선정) ⇒ ③사전심사결과 통보 ⇒ ④증빙서류제출 ⇒ ⑤증빙확인 ⇒ ⑥ 최종결과통보

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붙임 3>

<중소기업은행 인터넷 뱅킹>

IBK기업은행 대부 실행방법 안내

01 IBK기업은행 계좌가 없으신 고객님께서서는 가까운 IBK기업은행에 방문하셔서 계좌와 인터넷뱅킹을 먼저 신청하셔야 대부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미 계좌가 있고, 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신청을 하신 분들은 02번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02 IBK기업은행 개인뱅킹 접속하기

IBK기업은행 홈페이지 접속하여 「개인뱅킹」 선택

▶ 사이트 바로가기

03 대출 메뉴를 클릭하기

01 대출

04 IBK근로자생활안정대출(학자금 등) 메뉴를 클릭하기

02 대출

05 화면의 신청 절차에 따라 해당하는 내용을 순서대로 입력하면 대출완료

01 신청가능여부조회

05 대출약정 동의

02 보증서발급 내역조회

06 실행 및 약정

03 신용보증 신청

07 대출완료

04 대출신청

03 대출

〈붙임 4〉

〈중소기업은행 스마트폰 I-ONE 뱅크〉

스마트폰 (i-ONE 뱅크) 을 이용한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실행 안내



i-ONE 뱅크 설치방법

- ☑ 구글 Play 스토어/애플 앱 스토어에서 「i-ONE 뱅크」로 검색하여 다운로드 후 설치
- ☑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브라우저로 <http://one.ibk.co.kr> 접속하여 구글 Play 스토어/애플 앱 스토어의 설치페이지로 이동

대출실행 절차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3 소액채당금 제도

1 추진배경

도산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소액채당금제도」 신설

2 소액채당금 제도의 개요

가. 지급 대상 및 조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고, 퇴직시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15. 7. 1. 이후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퇴직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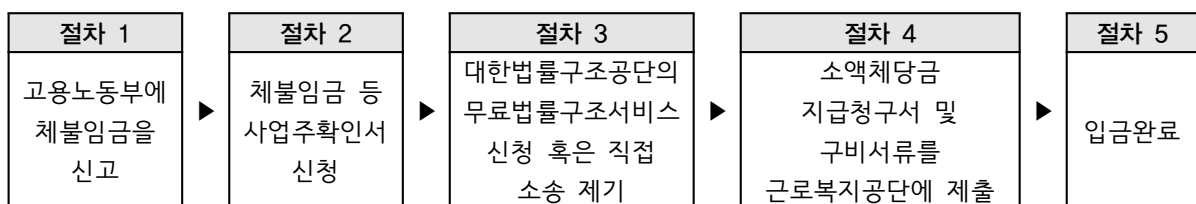
나. 지급 금액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최우선 변제금액 범위에서 300만원까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

다. 청구 및 지급 절차

- (청구기한) 확정판결 등이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
- (지급청구) 별도의 서식 “소액채당금 지급청구서” 을 작성하고 [판결문 등의 정보(확정증명원 정보)] 및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소액채당금 제도의 절차 체계도



□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연락처 (대표번호 1588-0075)**

- 일반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문의 ☎ 051-661-0185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문의 ☎ 051-661-0186
- 소액채당금 지급청구 문의 ☎ 051-661-0185
- FAX 0502-661-6100

부산국세청

1. 조선업종에 대한 세정지원	93
------------------------	----

1 조선업종에 대한 세정지원

1 세정지원 개요

-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납세자가 납세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

2 지원내용

- ◆ 납부기한연장, 징수·체납처분유예 신청시 요건 충족 여부 검토하여 적극 승인
- ◆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납세자에 대하여 1억원 (당초 5천만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특례기준 적용

□ 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 (납부기한연장) 신고하고 자진납부할 국세가 있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승인
- (징수유예) 이미 고지된 국세가 있어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승인
 - 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는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하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까지 승인여부를 통지
- (체납처분유예) 이미 체납된 국세가 있어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 등 고정자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

□ 담보제공 면제

- 유예세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최근 2년간 체납사실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담보제공 면제
 - 고용노동부 지정업체에 대한 납부기한연장 등 승인시 6개월 (체납처분유예는 1년),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 생산적 중소기업, 5년 이상 장기계속사업자,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재기중소기업인의 경우 1억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 세금포인트 제도*를 이용하여 납세담보 제공 면제 가능
 - *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고 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 신청시 보유한 포인트를 사용하여 납세담보제공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세금포인트 100점(개인) 또는 1,000점 이상인 경우 사용 가능
 - 납세담보 면제 금액은 연간 5억원 한도로 개인은 세금포인트 × 100,000원 × 100% , 법인은 세금포인트 × 100,000원 × 50%

3 신청절차

□ 관할세무서에 우편 · 팩스 · 방문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음

*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 세무서류 → 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 · 체납처분유예) 신청 → 신청서 입력 및 신청

* 신청서류 [붙임1] : (납부)기한연장신청서, 징수유예 · 체납처분유예신청서

《문의처》

부산국세청 징세과 ☎ 051-750-7503~7

붙임1 관련 서식 및 참고자료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07.4.4>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수수료
			3일	없 음
신청인	①성 명		②주 민 등 록 번 호	③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④주소 또는 사업장	(우 -)	⑤전 화 번 호	
	⑥상 호		⑦업 종	
신 청 내 용				
납부할 국세의 내용				⑪납기연장을 받고자 하는 금액
⑧세 목	⑨납 부 기 한	⑩금 액		
	. . .			
	. . .			
	. . .			
⑫연 장 받 고 자 하 는 사유				
⑬연 장 받 고 자 하 는 기 간	년 월 일	년부터	(일간)	년까지
	년 월 일			
분납금액 및 납부기한				
⑭횟 수	⑮세 목	⑯납 부 기 한	⑰금 액	
1 회		. . .		
2 회		. . .		
3 회		. . .		
<p>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납부기한 연장의 승인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세무서장 귀하</p> <p>구비서류 : 사유를 증빙하는 자료</p> <p>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p>				

22226-79111민
99.2.23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특급) 34g/m²)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5.2.23.>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

납세자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내용

납부할 국세 · 체납액의 내용						징수(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는 국세		
연도	세목	발행번호	납부기한 (독촉기한)	국세	가산금	계	국세	가산금

징수(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는 이유	
징수(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납부기한 및 분납금액						
횟수	연도	세목	납부기한	분납금액	국세	가산금
1회						
2회						
3회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82조의2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는 이유를 증명하는 자료 2. 담보제공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수수료 없음
------	--	--------

참고 **세금포인트 제도 법인과 개인 비교표**

구 분		개 인	법 인
세 금 포 인 트	대상	모든 개인납세자	조특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부여 대상 세목	종합소득·양도소득세 및 원천징수 되는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세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 당한 세액 포함)
	부여 시점	2000. 1. 1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	2012. 1. 1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
	누적 관리 기간	2000년부터 누적 부여 (소멸제도 없음)	최근 5년 동안 부여 (6년 이전 납부실적 소멸)
	부여 기준	신고·자납세액 100,000원 당 1점 (고지납부 0.3점)	신고·자납세액 100,000원 당 1점 (고지분 제외)
세 금 포 인 트	개요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시 납세담보제공 면제 혜택 부여 → 담보면제금액에 상당하는 세금포인트 차감	
	면제 금액	세금포인트×100,000원×100%	세금포인트×100,000원×50%
	한도	연간 5억원	
	유예 기간	최장 9개월	
사 용	승인 요건	① 승인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② 최근 2년 동안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③ 조세일실 우려가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① 승인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② 최근 2년 동안 체납사실 없으며 ③ 조세일실 우려가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 최근 2년간 1회 체납사실이 있어도 현재 체납이 없고 조세일실 우려가 없다면 승인 가능	* 최근 2년간 1회 체납사실이 있어도 승인 불가

참고	기한연장 관련 법령
-----------	-------------------

< 국세기본법 >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 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상중)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2조의2 【기한연장과 분납한도】

- ①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기한연장은 9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기한이 연장된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기한연장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가능하면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3조 【기한연장의 신청】

법 제6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기한연장의 승인】

-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제3조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3조 전단에 따른 신청에 대해서는 기한 만료일 전에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참고	징수유예 관련 법령
-----------	-------------------

< 국세징수법 >**제15조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 ①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납세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고지의 유예 또는 세액의 분할 고지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 ② 납세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의 유예를 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징수의 유예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 【징수유예기간과 분납 한도】

- ① 세무서장이 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로 징수를 유예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하고, 징수유예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징수유예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가능하면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23조 【징수유예의 신청】

납세자가 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고지 예정이거나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징수유예의 통지 등】

- ① 세무서장이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 ② 세무서장이 법 제15조제4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통지하고, 기각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참고	체납처분유예 관련 법령
-----------	---------------------

<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체납처분 유예】**

- 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제87조의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승인·통지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제82조의2 【체납처분 유예】**

- ① 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 ②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세액을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기간 이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 ③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23조와 제24조를 준용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사

1.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107
-----------------------------------	-----

1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 100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미고용 장애인 1인당 월71만원 최저임금액 부담금 부과

□ 주요지원내용

-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가산금, 연체금의 징수유예)
- 부담금 체납처분의 유예

□ 지원절차

- 유예신청안내(공단지사) → 유예신청(사업주) → 신청대상확인 및 심사(공단지사) → 유예대상 선정 및 통보(공단지사)

□ 부담금 등의 납부유예

- 2015년도분 부담금 중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금액, 2016년분 부담금, 2016.7.1.~2017.6.30. 기간중 발생하는 가산금, 연체금

□ 부담금 등의 체납처분 집행유예

- 신청대상 : 압류재산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
- * 은행지급보증서, 납부보증보험증권 등

□ 신청방법 : 내방, 팩스, 우편(유선신청 불가)

《문익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사 ☎ 051-640-9803 (담당: 과장 김동규)

국민연금관리공단 중부산지사

1. 실업크레딧 제도<근로자>	111
------------------------	-----

1 실업크레딧 제도<근로자>

- 개 요 :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희망시,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중 최대 1년)
- 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수급자(고소득자 및 재산가 지원 제한)
 - 2016.8.1.이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부터 적용
- 지원기간 :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생애 최대1년” 가능 (최대 지원기간 내 구직급여 반복 수급시 재신청 가능)
- 구직급여의 종류 : 고용센터에서 지급받는 구직급여 및 연장급여
- 지원방법 : 본인 부담분(연금보험료의 1/4) 납부하면, 연금보험료의 75% 지원
- 인정소득 : 실직 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원으로 상한 설정)(최대 본인부담 연금보험료 : 월15,750원)
- 신청방법 : 내방, 팩스, 우편(유선신청 불가)
- 신청기한 :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신청접수 : 국민연금, 고용센터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중부산지사 ☎ 051-660-3262(영도구), ☎ 051-603-1166(강서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1. 고용 · 산재보험료	115
---------------------	-----

1 고용·산재보험료

□ 개요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집행유예를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대상

-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
- 지정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도급을 받은 사업으로서 매출액의 1/2 이상이 지정 업종과 관련된 기업

□ 개정내용

-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하여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집행유예
 -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하며 건강·연금보험료는 체납처분 6개월간 유예 검토예정

□ 지원 절차

- (사업장) 지정대상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 (근로자) 직장가입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본인신청 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실직 후 최대 2년간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하며 근로자 부담분보험료(사업장부담금 제외)만 납부 가능

※ 추가적인 사항은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될시 사업장 대상 홍보 실시 예정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각 지사 ☎ 1577-1000

부산신용보증재단

1.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 특례보증 등 취급지침	119
----------------------------------	-----

1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 특례보증 등 취급지침

1. 시행목적

- 수주 급감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조선업종의 구조조정 지원 및 관련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 지원 필요

2. 시행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24조의 4

3. 규정적용 기준

- 본 지침은 제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회의 취급기준 및 보증관련 제 규정에 의함

4. 피해기업 지원 내용

① 특례보증을 통한 신규 보증(1,000억원) 지원

① [Track 1] 구조조정 대상 조선사의 협력기업

- (보증대상) 정부가 발표한 구조조정 대상 조선사*의 협력기업**으로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가동(영업)중이고 신보 또는 기보와 보증거래가 없는 중소기업

* 조선사 : 현대중공업 3사(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STX조선해양, 성동조선, SPP조선, 대선조선

** 협력기업 : 구조조정 대상 조선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주잔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보증한도) 본건 최대 2억원 이내(같은기업당 8억원 이내)
- (보증료 및 재보증료) 연 0.5%

② [Track 2] 구조조정 대상 조선사 조선소 소재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등

- (보증대상) 정부가 발표한 구조조정 대상 조선사* 조선소 소재지 시·군·구(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조선사 : 'Track 1'과 동일

** 조선소 소재지 시·군·구 : <참고> 조선소소재지 현황(기초자치단체기준)

- (보증한도) 본건 5천만원 이내에서 같은기업당(신·기보 포함) 1억원 이내
- (보증료 및 재보증료) 연 0.8%

③ Track 별 공통 적용 사항

- (보증비율) 100%
- (재보증비율) 60%

② 기보증 만기도래시 상환(보증 일부해지) 없이 기한연장

- (지원대상) 정부가 발표한 구조조정 대상 조선사의 협력기업* 및 정부가 발표한 구조조정 대상 조선사의 조선소 소재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단위)내의 기업으로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가동(영업)중인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협력기업 : 구조조정 대상 조선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주잔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조선소 소재지 시·군·구 : <참고> 조선소 소재지 현황(기초자치단체 기준) 참조

- (지원내용) 기 취급된 보증건의 보증기한이 '16년 말 이전에 도래 된 보증의 경우, 폐업을 제외하고 대출원금 상환없이 기한연장 실시

* 단 해당 협력기업이 대상 협력기업임을 증빙하고 상환없이 기한연장 요청한 경우에 한함

3] 보증 사고처리 유보

- (유보 대상) 정부가 발표한 구조조정 대상 조선사의 협력기업*으로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가동(영업)중인 중소기업

* 구조조정 대상 조선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주잔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지원내용) 보증사고 통보된 기업으로서 가동(영업) 중인 경우 '16년 말까지 사고처리 및 채권보전조치 유보

* 해당 협력기업이 대상 협력기업임을 증빙하고 사고처리유보를 요청한 경우에 한함.

단, 폐업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 접수기업의 경우 보증 사고처리 및 채권보전조치 실시

5. 시행기간 : 2016. 7. 4. ~ 2016. 12. 31

[특례보증의 경우 신용보증신청서 접수일 기준]

《문의처》

부산신용보증재단 ☎ 051-860-6600

〈참고〉

조선소 소재지 현황(기초자치단체 기준)

조선업체명	해당자치구
현대중공업	울산 동구, 남구, <u>울주군</u>
	전북 군산시
현대삼호중공업	전남 영암군
현대미포조선	울산 동구
대우조선해양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경남 거제시
STX조선해양	경남 창원시, <u>김해시</u>
성동조선해양	경남 통영시
SPP조선	경남 고성군
	경남 통영시
	경남 사천시
대선조선	부산 영도구, 사하구, <u>중구 강서구</u>

금융위원회

1. 경영안정지원자금 125
2. 사업재편지원자금(산은) 125
3. 시설투자촉진펀드(기은) 126
4. 경영안정을 위한 보증(신보) 126
5. 긴급경영안정보증(기보) 128

1 경영안정지원자금

- (신청절차) 기존 거래 산업은행 영업부 또는 지점
- (지원대상) 매출채권 회수지원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은 부족하나 정상화 가능한 기존 거래 기업
 - ※ 계열대기업 및 부실기업(구조조정 대상·신용등급 CC 이하 등)은 지원대상 제외
- 지원내용
 - 지원자금 : 운영자금
 - 지원기간 및 횟수 : 1년 이내, 연 1회
 - 운용규모 : 2,000억원 (중소기업 50억원, 중견기업 70억원 이내)

2 사업재편지원자금(산은)

- 신청절차
 - 산업은행 영업점 또는 지점 : 상담 및 용자신청 가능
 - 현장반 : 상담만 가능
- 지원대상
 - (지원대상) 공급과잉 해소, 생산성 및 재무건건성 향상 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 (단, 신용위험평가 C, D 등급 기업 제외)
 - 자금용도
 - 사업구조 변경 관련 지분 및 영업(자산) 인수 관련 소요자금
 - 사업구조 변경 기업의 사업혁신 추진 관련 소요자금
- 지원내용
 - 지원자금 : 시설(8년 이내), 운영(3년 이내), 투자(주식 및 주식관련채)

3 시설투자촉진펀드(기은)

- (신청절차) 각 기업은행 영업점
- (지원대상) 신규 시설투자를 실시하는 중소기업
- (지원조건)
 - 자금용도 : 사업장(부지)구입, 건물신축, 기계 구입자금 등
 - 지원방식 : 대상기업의 수요에 따라 대출 또는 투자*로 지원
 - * 주식(우선주 등) 및 주식연계증권(CB, BW 등)
- (지원특례)
 - 금리우대 : 산출 대출금리에서 1.0%p 자동감면
- (지원제한)
 - 지원한도 : 동일 기업당 최대 150억원으로 제한
 - 타행대환 : 신규 설비투자 지원을 위하여 기존대출의 상환을 위한 지원 금지

4 경영안정을 위한 보증(신보)

- (신청 절차) 신보 영업점에 신청
- (지원 대상) 재무 여건이 건실하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거래 대기업(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으로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협력중소기업
- (지원 내용) 조선업, 선박 부품 제조업 등 지역주력(협력)산업 영위 기업에 대해 보증료 및 보증비율을 우대*하여 보증 지원
- * 보증비율 85%→ 90%, 보증료율 0.1%p 차감. 개별 기업·자금 특성에 따라 추가 우대 가능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조선해양 관련 주요 지역주력산업 및 지역협력산업》

지 역	세부업종	
경남, 전남	C25112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C25929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C25999	그 외 분류 안 된 금속가공제품
	C28122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C29111	내연기관 제조업
	C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C29133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C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C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C31111	강선 건조업
	C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C31113	비철금속 선박 및 기타 항해용 선박 건조업
	C31114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C31119	기타 선박 건조업
C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부산, 울산	C24123	철강선 제조업
	C24131	주철관 제조업
	C24132	강관 제조업
	C24199	그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C25113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C25119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C25943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C25999	그외 기타 분류 안 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9111	내연기관 제조업
	C29142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C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C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5 긴급경영안정보증(기보)

- (신청절차) 구조조정 협력기업 지원반 or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 *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 「사이버영업점 SOS센터」 신청가능
- (지원대상) 기술력과 사업성이 있으나 일시적으로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으로서 신속한 자금지원이 필요한 기업
 - * 주요거래처 조업중단, 매출채권 회수부진, 원재료 가격 급등 등
- (보증한도) 같은 기업당 최대 운전자금 30억원, 시설자금 100억원
- (보증절차) 긴급한 자금수요기업에 대한 보증인 점을 감안, 보증심사 등 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신속한 처리*
 - * 단, 보증심사절차를 통해 승인된 업체에 한해 지원가능

보증절차		
 보증신청	신청기업	인터넷(홈페이지내 사이버영업점)에서 신청 •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고객과의 상담을 통하여 기술사업내용,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 결정 및 서류 준비 안내 • 기술력사전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기술사업의 주요 내용 파악
 접수/조사자료 수집	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신속한 보증처리를 위하여 상담일로부터 보증처리과정 모니터링 실시
 기술평가/조사	영업점 평가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 •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생산 능력 및 경영상태, 자금상태 등을 확인
 심사·승인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
 보증서발급	영업점 평가담당자	보증약정 후 채권기관에 전자보증서 발송

《문의처》

금융위원회 ☎ 02-2100-2867

〈안내〉

현장 합동설명회 개최 일정 및 장소 등

대상		시기	장소	참여기관
한진 중공업 (사내 협력업체 포함)	사업주	8.17.(수) 15:00~16:30	사업장 내 HSE 교육장	○ 사업주 대상 - 부산(동부·북부) 부산고용노동청 - 부산중소기업청 - 부산광역시 - 부산국세청 등 ○ 근로자 대상 - 부산(동부·북부) 부산고용노동청 -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등
	근로자	8~9월 중	"	
대선조선 (사내 협력업체 포함)	사업주	7.27.(수) 14:00~15:30	본사 인근 기공공장 3층 강당 (홈플러스 영도점 앞)	
	근로자	8~9월 중	"	
강서구 (소규모 조선업체, 기자재업체)	사업주	7.26.(화) 14:00~15:30	중소기업청 3층 대강당	
	근로자	9.1.(목) 18:20~19:00	"	
영도구 (소규모 조선업체, 기자재업체)	사업주	8.30.(화) 18:20~19:50	영도구청 지하 1층 대강당	
	근로자	9.6.(화) 18:20~19:00	"	
종합 (기업·지역별 미참여자 대상)	사업주	9.21.(수) 16:30~17:50	부산고용센터 5층 대회의실	
	근로자	9.28.(수) 18:20~19:00	"	

* 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설명회 참석하시기 전에 부산고용노동청(부산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일정 및 장소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